

국가회계 재정통계

2020년 3분기

Vol. 24

News Letter

Government Accounting and Finance Statistics Center

국가회계 동향

- 「국가회계 프로젝트: 재무보고 개선」 연구자문 진행
- 국제공공부문의회계기준위원회(IPSAS) 3분기 정례회의 안건분석
- 『2017-19 IPSASB 정례회의 안건 분석』 발간
- 『Enforcement Rule of Central 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s』 영문 국가회계기준 발간
- 『알기 쉬운 국가회계』 발간
- 제1회 「KIPF 발생주의 회계 국제심포지엄」 웹심포지엄 개최 안내

국가결산 및 교육 동향

- 2020회계연도 재무결산 중간점검 실시
- 『2020 재무결산 오류사례 해설』 발간
- 2020년 국가회계 전문교육 실시 결과(3~9차)
- 2020년 국가회계 전문교육 안내(재무결산실무 과정)

재정통계 동향

- 「2021년 예산안」 편성 및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등
- 「2020~2024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출
-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재정통계 근거 법령 마련
- 2019회계연도 준정부기관 결산결과 분석

공익법인회계 동향

- 공익법인 관련 2020년 세법 개정안
- 공익법인회계기준 전문가 간담회

오피니언

- 감사원 결산감사에 따른 국가재무제표 오류유형 분석 및 개선방안

특집

- 국회가 바라본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

센터동향

- 국가회계 자문위원 신규(재) 위촉
- 「효율적 정책결정을 위한 발생주의 국가회계정보 이용 활성화방안」 최종보고
- 제1차 및 제2차 「발생주의 재무정보 연구회」 개최
- 「공기업·준정부기관 재무결산서 개선방안」 최종보고
-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신뢰성 제고방안」 최종보고서 제출

세미나

- 2020년 한국정부회계학회 하계학술대회 결과보고
- 「2020년 한국회계기준원 개원 21주년 기념 웹세미나」 결과보고

공지사항

- 뉴스레터 구독 안내
- 홈페이지 이용 안내



국가회계 재정통계

2020년 3분기

Vol. 24

News Letter

Government Accounting and Finance Statistics Center

01. 국가회계 동향	2
① 「국가회계 프로젝트: 재무보고 개선」 연구자문 진행	2
②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 3분기 정례회의 안건분석	3
③ 「2017-19 IPSASB 정례회의 안건 분석」 발간	22
④ 「Enforcement Rule of Central 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s」 영문 국가회계기준 발간	24
⑤ 「알기 쉬운 국가회계」 발간	24
⑥ 제1회 「KIPF 발생주의 회계 국제심포지엄」 웹심포지엄 개최 안내	26
02. 국가결산 및 교육 동향	28
① 2020회계연도 재무결산 중간점검 실시	28
② 「2020 재무결산 오류사례 해설」 발간	29
③ 2020년 국가회계 전문교육 실시 결과(3~9차)	30
④ 2020년 국가회계 전문교육 안내(재무결산실무 과정)	31
03. 재정통계 동향	33
① 「2021년 예산안」 편성 및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등	33
② 「2020~2024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출	38
③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재정통계 근거 법령 마련	40
④ 2019회계연도 준정부기관 결산결과 분석	42
04. 공익법인회계 동향	51
① 공익법인 관련 2020년 세법 개정안	51
② 공익법인회계기준 전문가 간담회	56
05. 오피니언	57
① 감사원 결산검사에 따른 국가재무제표 오류유형 분석 및 개선방안	57
06. 특집	62
① 국회가 바라본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	62
07. 센터동향	71
① 국가회계 자문위원 신규(재) 위촉	71
② 「효율적 정책결정을 위한 발생주의 국가회계정보 이용 활성화방안」 최종보고 ..	72
③ 제1차 및 제2차 「발생주의 재무정보 연구회」 개최	74
④ 「공기업·준정부기관 재무결산서 개선방안」 최종보고	80
⑤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신뢰성 제고방안」 최종보고서 제출	81
08. 세미나	82
① 2020년 한국정부회계학회 하계학술대회 결과보고	82
② 「2020년 한국회계기준원 개원 21주년 기념 웹세미나」 결과보고	90
09. 공지사항	95
① 뉴스레터 구독 안내	95
② 홈페이지 이용 안내	95

01 국가회계 동향

1 「국가회계 프로젝트: 재무보고 개선」 연구자문 진행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이하 '센터')는 2020년 국가회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재무보고 개선' 과제에 대하여 2020년 8월 연구자문 T/F를 구성하였다. '재무보고 개선' 과제는 재무제표와 '주석 등 부속서류'로 구분하여 2021년까지 연구자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재무정보를 국민에게 보다 알기 쉽고, 유용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재무제표 등 재무보고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정책과제로 국가회계기준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된다.

2020년 연구자문 T/F는 금년 11월까지 3개월간 진행되며 재무제표 간소화, 정보이용자의 이해가능성 제고를 위한 재무제표 신설 등 센터에서 검토한 15개의 과제에 대하여 5차례의 서면 검토와 화상회의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

과제명	세부과제
(1) 재무제표 간소화	
① (국가) 재정운영표 간소화	중앙관서 통합 / 분야별 원가정보 제공 / 내부거래 정보 반영
② 재정상태표 간소화	공시과목 별도 지정 / 계정과목 개편 / 작성단위 변경(조, 억)
③ (실체) 재정운영표 간소화	부문별 원가정보 제공 / 계정과목 개편 / 비배분 수익·비용 총액 표시
(2) 재무제표 신설	
① 부속서류 위상 강화	국세징수활동표, 성질별 재정운영표 재무제표화

과제명	세부과제
② 다양한 정보 제공	사회보험상태표 신설 / 실체별 재무제표 신설
③ 정보이용자 이해가능성 제고	국가재무제표에 사회보험 별도 표시 / 비교환수의 명세서 신설

연구자문 T/F 위원은 국가회계 관련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 및 국가회계자문위원 등 총 8명의 전문가로 구성하였으며, T/F에서 작성한 연구자문서는 2020년 말 발간 예정인 「재무보고 개선 쟁점보고서(DP)」의 부록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재무보고 개선 연구자문 T/F 위원 현황(8명)

김봉환(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유승원(경찰대학교), 윤재원(홍익대학교), 이아영(강원대학교), 전중열(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도진(중앙대학교), 지현미(계명대학교), 최연식(경희대학교), 이상 가나다순

2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 3분기 정례회의 안건분석

다음은 이번 2020년 9월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 정례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안건의 내용과 그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안건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IP SASB 웹사이트(<https://www.ipsasb.org/meetings/ipsasb-virtual-meeting-september-14-18-and-september-22-2020>)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프로젝트	안건
가. 코로나19로 인한 시행일 연기	안건 3: 코로나19로 인한 시행일 연기 (COVID-19: Deferral Of Effective Dates)
나. 차입원가	안건 4: ED 74, ‘차입원가 개정’ (ED 74, Amendments To IPSAS 5, Borrowing Costs)

프로젝트	안건
다. 공공부문 특유 금융상품	안건 5: 공공부문 특유 금융상품 (Public Sector Specific Financial Instruments)
라. 리스	안건 6: 리스(Leases)
마. 개념체계, 측정	안건 7: 개념체계 일부 개정과 측정 (ED 76 & ED77, Conceptual Framework-Limited Scope Update And Measurement)
바. 매각예정비유동 자산과 공공부문 중단영업	안건 8: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공공부문 중단영업 (Non-Current Assets Held For Sale And Discontinued Operations)
사. 유산, 사회기반 시설	안건 9: ED 78, IPSAS 17 업데이트, 유산 및 사회기반시설 (ED 78, IPSAS 17 Update, Heritage And Infrastructure)
아. 자연자원	안건 10: 자연자원 (Natural Resources)

가. ED 73, 코로나19로 인한 시행일 연기

(ED 73, COVID-19: Deferral Of Effective Dates)

□ 배경 및 목적

- (배경) 코로나19로 인해 시행 예정이었던 일부 기준서의 시행일을 연기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목적) 2022년 1월 시행 예정이었던 IPSAS 41, ‘금융상품’, IPSAS 42, ‘사회보장급여’, IPSAS 36의 개정, ‘관계실체와 공동실체에 대한 장기투자지분’, IPSAS 41의 개정, ‘부(-)의 보상을 수반하는 중도상환특성’, IPSAS 19의 개정, ‘집합적·개별적 서비스’, 2019 IPSAS 연차개선의 시행일을 2023년 1월로 연기

□ 진행 경과

프로젝트 단계	2020년			
	1Q	2Q	3Q	4Q
Project Brief(과제 제안)				
Consultation Paper (자문보고서)				
Exposure Draft(공개초안)				
IPSAS(기준서 발표)				

□ 주요 논의사항

세부 안건	주요 논의사항
3.2.1	<p>[ED 73, ‘코로나19로 인한 시행일 연기’에 대한 의견 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부 응답자는 IPSAS 41, IPSAS 41 개정, IPSAS 36 개정이 2008년 금융 위기 대응을 목적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해당 기준서의 시행일 연기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그 외 응답자는 시행일 연기에 일괄 동의함 Staff는 ED 73이 시행일 연기가 적용되는 기준서의 조기 시행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응답자 의견에 따른 추가 수정 없이 ED 73의 최종 승인을 제안
3.2.2	<p>[ED 73, ‘코로나19로 인한 시행일 연기’의 최종 승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19로 인한 시행일 연기’의 최종 승인을 제안

나. ED 74, ‘차입원가 개정’(ED 74, Amendments To IPSAS 5, Borrowing Costs)

□ 배경 및 목적

- (배경) 자문보고서, ‘측정’을 통해 차입원가 회계처리 이슈 발생
 - 자문보고서 의견수렴 결과, 차입원가의 자산화와 비용화에 대한 의견이 수렴되지 않음
 - ‘적격자산’과 ‘직접 관련되는 차입원가’의 규정이 모호함
- (목적) IPSAS 5, ‘차입원가’ 기준서 개정

□ 진행 경과

프로젝트 단계	2019년				2020년			
	1Q	2Q	3Q	4Q	1Q	2Q	3Q	4Q
Project Brief(과제 제안)								
Consultation Paper (자문보고서)								
Exposure Draft(공개초안)								
IPSAS(기준서 발표)								

□ 주요 논의사항

세부 안건	주요 논의사항
4.2.1	<p>[ED 74, '차입원가 개정' 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ED 74, '차입원가 개정'에서는 차입원가의 선택적 회계처리를 유지하고, 추가 지침을 통해 '적격자산'과 '직접 관련되는 차입원가'의 해석을 구체화할 것
4.2.2	<p>[ED 74, '차입원가 개정' 승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ED 74, '차입원가 개정'을 발표하여 응답자 의견을 수렴할 것

다. 공공부문 특유 금융상품(Public Sector Specific Financial Instruments)

□ 배경 및 목적

- (배경) 공공부문 특유 금융상품에 대한 상세 지침 미비
 - IPSAS 41, '금융상품'은 IFRS 9, '금융상품'에 기반하여 공공부문 특유의 금융상품(화폐용 금, 유통통화 등) 관련 지침 부족
- (목적) IPSAS 41, '금융상품'의 개정

□ 진행 경과

프로젝트 단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Project Brief (과제 제안)																								
Consultation Paper (자문보고서)																								
Exposure Draft (공개초안)																								
IPSAS (기준서 발표)																								

□ 주요 논의사항

세부 안건	주요 논의사항
5.2.1	<p>[ED 69의 업데이트 사항 요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aff는 ED 69, ‘공공부문 특유 금융상품(IPSAS 41 개정사항)’에 대한 응답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다음의 수정사항을 반영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부문 특유 금융상품에 대한 그간의 IPSASB 논의결과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결론도출근거의 순서 및 표현 수정 (2) 실무적용지침(IG) 섹션 B의 개발 의도를 명시하는 문구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거래가 IPSAS 41에 따른 금융상품 정의를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할 비권위적 지침 제공 (3) IE211의 적용 대상 실체를 명확히 하기 위한 문구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환 성격의 고정 납입금(capital subscriptions) 관련 사례가 국제개발은행(IDB)에 국한되어 발생하지 않음
5.2.2	<p>[ED 69의 IPSAS 승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D 69, ‘공공부문 특유 금융상품(IPSAS 41 개정사항)’의 절차 준수에 대한 평가 및 시행일 의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 1월 1일

라. 리스 (Leases)

□ 배경 및 목적

- (배경) IFRS 16과의 정합성 제고 및 할인리스 관련 지침 미비
 - 2016년 1월에 발표된 IFRS 16, '리스'와의 정합성을 위한 IPSAS 13, '리스'의 개정 소요 발생
 - 공공부문 특유 이슈인 '할인리스(concessionary leases)'에 관한 회계처리 규정 미비
- (목적) IPSAS 13, '리스'를 대체할 신규 리스 기준서 개발

□ 진행 경과

프로젝트 단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Project Brief (과제 제안)																				
Consultation Paper (자문보고서)																				
Exposure Draft (공개초안)																				
IPSAS (기준서 발표)																				

□ 주요 논의사항

세부 안건	주요 논의사항
6.2.1	<p>[증분차입이자율과 리스 내재이자율의 차이 이슈의 공공부문 특유성 판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스이용자가 리스 내재이자율을 즉시 산정할 수 없어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할 경우 증분차입이자율과 리스 내재이자율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이러한 증분차입이자율과 리스 내재이자율의 차이 이슈가 공공부문 특유의 이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검토결과와 결론도출근거 반영의 필요성 논의
6.2.2	<p>[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과 리스 내재이자율의 산정 능력 부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스이용자의 리스료 할인을 산정에 관한 공공부문 특유의 별도 지침 개발 필요성 검토 및 검토결과와 결론도출근거 반영 여부 논의
6.2.3	<p>[ED 75와 다른 IPSASB 문헌(literature)의 연결 이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D 75, ‘리스’와 현행 또는 개발 중인 IPSASB 문헌(IPSAS 41 및 ED 70·71·72·79)과의 연결고리 분석 • ED 75, ‘리스’의 최종 기준서 승인 시 관련되는 IPSASB 문헌의 시행일 및 적용순서 논의
6.2.4	<p>[ED 75, ‘리스’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D 75에 대한 IPSASB의 2020년 6월 제안사항의 반영결과 검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IFRS 16의 용어를 공공부문 특성에 맞게 수정 (2) 계약(contract)의 정의 적용과 관련, IPSAS 41과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문단 추가 (3) 결론도출근거에 대한 편집 수정사항 반영 (4) 결론도출근거에 ED 75에서 할인리스(concessionary leases)를 다루지 않는 이유 명시
6.2.5	<p>[정보요청서(RFI)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요청서 검토그룹(RFI Review Group)이 제안한 정보요청서(안)의 제목 및 문의 대상 4개 섹션 내용에 대한 검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목: 할인리스 및 기타 리스와 유사한 약정의 회계처리에 대한 정보요청서 (2) 4가지 이슈별 섹션: 할인리스, 무상리스, 접근권한, 기타 리스와 유사한 약정

마. ED 76 & ED 77, 개념체계 일부 개정과 측정

(ED 76 & ED 77, Conceptual Framework-Limited Scope Update And Measurement)

□ 배경 및 목적

- (배경) 2014년 공공부문 일반목적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이하 ‘개념체계’) 발표 이후 개정이 요구되며, 개념체계와 개별 기준서의 측정 규정 간 일관성이 요구됨
- (목적) 일부 이슈에 대한 개념체계를 수정하고, 공공부문 자산·부채의 측정기준과 측정방법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기준서의 개발

□ 진행 경과

프로젝트 단계	2019년				2020년			
	1Q	2Q	3Q	4Q	1Q	2Q	3Q	4Q
Project Brief(과제 제안)								
Consultation Paper(자문보고서)								
Exposure Draft(공개초안)								
IPSAS(기준서 발표)								

□ 주요 논의사항

세부 안건	주요 논의사항
7.2.1	<p>[개념체계 일부 개정과 측정의 이슈 연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3분기에는 개념적 이슈를 검토하여 추후 발표될 공개초안 지침의 개략적인 틀을 만들 예정임
7.2.2	<p>[측정의 서열체계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의 서열체계는 후속 측정에 적용되며, 최초 인식 시 측정에는 적용되지 않음

세부 안건	주요 논의사항
7.2.3	<p>[이행가치(Fulfillment Value)와 이행원가(Cost of Fulfillmen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행원가(Cost of Fulfillment)의 용어와 정의의 변경 여부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이행원가 용어와 개념체계의 이행원가 지침을 유지함
7.2.4	<p>[현행가치 모델의 측정기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가치 모델의 측정기법으로 시장접근법, 이익접근법, 원가접근법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접근법(Market Approach): 동일하거나 비교할 수 있는 자산, 부채, 사업과 같은 자산과 부채의 집합에 대해 시장거래에서 생성된 가격이나 그 밖의 목적적합한 정보를 사용하는 가치평가기법 - 이익접근법(Income Approach): 미래 금액(예: 현금흐름이나 수익과 비용)을 현재의 할인된 금액으로 전환하는 가치평가기법 - 원가접근법(Cost Approach): 자산의 사용능력을 대체할 때 현재 필요한 금액을 반영하는 가치평가기법
7.2.5	<p>[역사적원가 모델의 측정기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각후원가가 역사적원가 측정기준의 측정기법에 해당하는지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각후원가는 역사적원가 측정기준의 측정기법에 해당하지 않음
7.2.6	<p>[시장접근법이란 무엇인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접근법에 관련된 일반 지침을 본문으로 이동시켜 시장접근법이 여러 측정기준에 적용되는 측정기법임을 명확히 함
7.2.7	<p>[시장접근법의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접근법은 현재 시장거래의 정보를 사용하므로, 실체가 현재 시장에서 수취하거나 지급할 자산과 부채의 대가를 추정하는 측정기준에 적합함 • 시장접근법이 적용 가능한 측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가치: 시장접근법은 기업의 자산과 부채의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시장 참여자의 관점에 기초하여 시장거래가격의 현행 시장조건 데이터를 제공함 - 현행원가: 현행원가는 유입기반 가치(예: 자산의 매입 가격)를 제공함
7.2.8	<p>[이익접근법이란 무엇인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익접근법에 관련된 일반 지침을 본문으로 이동시켜 이익접근법이 여러 측정기준에 적용되는 측정기법임을 명확히 함
7.2.9	<p>[이익접근법의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익접근법은 미래현금흐름, 현금흐름 추정치와 시점의 변동,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함. 따라서 이 측정기법은 미래의 현금흐름에 기초하여 가치를 계산하고자 하는 측정기준에 적합함

세부 안건	주요 논의사항
7.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익접근법이 적용 가능한 측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가치: 시장참여자는 일반적으로 미래현금흐름에서 도출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판매가격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익접근법은 유출가치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치를 제공할 수 있음 - 사용가치: 이익접근법은 미래현금흐름과 기업 특유의 요소에 기초한 추정치를 제공할 수 있음 - 이행원가: 이익접근법은 부채와 관련된 미래현금흐름과 그 밖의 요소에 기초한 추정치를 제공할 수 있음
7.2.10	<p>[원가접근법이란 무엇인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가접근법에 관련된 일반 지침을 본문으로 이동시켜 원가접근법이 여러 측정기준에 적용되는 측정기법임을 명확히 함
7.2.11	<p>[대체원가와 원가접근법의 비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aff와 T/F는 자문보고서, '측정'의 대체원가 관련 지침과 이번 공개초안의 원가접근법을 비교 검토함 • 검토결과, 자문보고서, '측정'의 대체원가 지침은 공개초안, '측정'의 원가접근법 지침과 일치함
7.2.12	<p>[서비스능력과 서비스잠재력 비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능력(Service Capacity)과 서비스잠재력(Service Potential) 용어의 적용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능력 용어를 삭제함
7.2.13	<p>[원가접근법의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가접근법은 자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대체자산의 취득이나 건설을 통해 대체하기 위해 현재 필요한 금액을 반영함. 따라서 이 측정기법은 현재 대체원가를 통해 가치를 계산하고자 하는 측정기준에 적합함 • 원가접근법이 적용 가능한 측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가치: 시장참여자는 일반적으로 대체자산을 취득하거나 건설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초과하는 판매가격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원가접근법은 유출가치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치를 제공할 수 있음 - 현행원가: 원가접근법은 자산의 서비스를 대체하는 데 필요한 금액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7.2.14	<p>[측정기법을 공개초안에 수록하는 방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aff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측정기법 지침을 수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함

세부 안건	주요 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적용지침: 각 측정기법의 일반 지침을 본문에 수록. 일반 지침은 모든 측정기준에 따라 측정할 때 적용 가능함 - 구체적인 적용지침: 각 측정기준 관련 적용지침(AG)에 측정기법의 구체적인 지침을 수록. 구체적인 지침은 해당 측정기준에 따라 측정할 때에만 적용 가능함
7.2.15	<p>[역사적원가 측정기준 관련 지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적원가 측정기준의 최초인식과 후속측정에 관한 지침을 수록함 • (최초인식) 역사적원가 측정기준은 거래가격으로부터 도출되는 자산과 부채의 화폐가치를 측정함. 거래가격은 각 상황에서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가격이 시장조건인 경우 수취 대가가 자산과 부채의 최초 가치임 - 거래가격이 비시장조건인 경우 현행가치 측정기준(공정가치, 사용가치, 현행원가)에 따라 최초 가치가 결정됨 • (후속측정) 역사적원가의 후속측정은 최초인식 시 측정된 거래가격에서 현재 사건(상각, 상환) 등의 영향을 반영한 측정치를 제공함
7.2.16	<p>[현행원가 측정기준이란 무엇인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체가 운영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에는 공정가치 측정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원가 측정기준은 특정 경우에 공정가치를 대신하여 현행가치를 반영할 수 있음 • (자산의 현행원가) 자산의 현행원가는 운영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의 측정에 적용할 수 있음 • (부채의 현행원가) IPSASB는 부채의 현행원가를 개념체계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결정함
7.2.17	<p>[사용가치란 무엇인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가치에 대한 기존 개념체계의 정의를 유지함 • 사용가치는 현금창출자산과 비현금창출자산 모두에 적용되는 측정기준임
7.2.18	<p>[해제원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채의 측정기준인 해제원가를 개념체계에서 제외시킴
7.2.19	<p>[인수가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채의 측정기준인 인수가격을 개념체계에서 제외시킴
7.2.20	<p>[순판매가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의 측정기준인 순판매가격을 개념체계에서 제외시킴

세부 안건	주요 논의사항
7.2.21	<p>[측정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개념체계의 측정 목적을 유지함
7.2.22	<p>[복합 사용자자산의 측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창출과 비현금창출에 모두 사용되는 복합사용자자산의 주된 목적에 따라 공정가치 측정기준 적용의 적절성이 결정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된 목적이 현금창출 목적(재무 목적)인 경우 공정가치 측정기준 적용이 적절함 - 주된 목적이 비현금창출 목적(운영 목적)인 경우 공정가치 측정기준 적용은 부적절함 • 복합 사용자자산의 주된 목적을 결정하는 데에는 IPSAS 21, '비현금창출자산의 손상'과 IPSAS 26, '현금창출자산의 손상'이 적용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된 목적 판단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판단을 적용하고 실체 특유, 거래 특유 요소를 고려하여 자산의 주된 보유 목적이 상업적 이익을 얻기 위함인지 결정함 (2) 일관성 있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유의적인 현금흐름을 고려함 - 이러한 과정을 통해 주된 목적이 현금창출 목적이라고 결론지을 수 없는 경우, 실체는 해당 자산의 주된 목적이 비현금창출 목적이라고 추정함
7.2.23	<p>[하나의 기준서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여러 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의 측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나의 기준서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여러 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공정가치가 적절한 측정기준인지 판단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체는 자산의 보유 목적이 현금창출과 비현금창출 중 무엇인지를 전문가적 판단을 통해 평가함 - 이때 실체는 실체 특유, 거래 특유 요소를 고려함 - 현금창출이 목적인 경우 공정가치가 측정기준으로 적절하지만, 비현금창출이 목적인 경우 공정가치는 적절하지 않음
7.2.24	<p>[ED 77의 구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과 같이 ED 77, '측정'의 구조를 설계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문: 주요 용어 정의, 측정기준과 측정기법의 원칙 제시 - 적용지침: 측정기준의 지침을 확장, 측정기법이 측정기준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규정
7.2.25	<p>[대체원가 지침의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체원가 지침에 대해 제기된 비개념적 이슈에 대해 적절한 개선이 이루어짐

세부 안건	주요 논의사항
7.2.26	[역사적원가 지침의 개선] •역사적원가 지침에 대해 제기된 비개념적 이슈에 대해 적절한 개선이 이루어짐
7.2.27	[공정가치 지침의 개선] •공정가치 지침에 대해 제기된 비개념적 이슈에 대해 적절한 개선이 이루어짐
7.2.28	[이행가치 지침의 개선] •이행가치 지침에 대해 제기된 비개념적 이슈에 대해 적절한 개선이 이루어짐

바. ED 79,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공공부문 중단영업

(Non-Current Assets Held For Sale And Discontinued Operations)

□ 배경 및 목적

- (배경) 현재 IPSAS 기준서 중 매각예정비유동자산에 관한 기준서 및 회계처리 지침의 부재
- (목적) IFRS 5,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대응하는 IPSAS 기준서를 개발하여 공공부문의 매각예정비유동자산 회계처리 지침을 마련

□ 진행 경과

프로젝트 단계	2020년			
	1Q	2Q	3Q	4Q
Project Brief(과제 제안)				
Consultation Paper(자문보고서)				
Exposure Draft(공개초안)				
IPSAS(기준서 발표)				

□ 주요 논의사항

세부 안건	주요 논의사항
8.2.1	<p>[여유자산과 다른 공공부문 실체에 이전될 자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유자산 및 다른 공공부문 실체에 이전될 자산에 대한 추가 공시사항은 없음
8.2.2	<p>[장부가액으로 측정되는 자산의 공정가치 공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부가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날 경우, 장부가액으로 측정되는 매각 예정비유동자산의 공정가치를 공시해야 함
8.2.3	<p>[공정가치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매각예정비유동자산 회계처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가치를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ED 79,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공공부문 중단영업'의 회계처리는 적용되어야 함 • 공정가치를 결정하기 불가능한 경우는 ED 79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8.2.4	<p>[2020년 6월 정례회의 지시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부문 간 자산이전에 대해 다른 IPSAS 기준서에 제거 및 취득 관련 규정이 있으므로 ED 79에 추가 규정은 불필요함 • IPSAS 16, '투자부동산'에서 ED 79에 추가할 여유자산 관련 공시 규정은 없음 • IPSAS 기준서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므로 '상업적 거래' 용어는 ED 79에 적절함 • IPSAS 32, '민간투자사업 사업허가자'의 민간투자사업자산을 사업허가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자산은 ED 79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허가자는 민간투자사업자산을 통제하기 때문 - 사업허가자는 민간투자사업자산을 판매할 의도가 없기 때문 •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된 영업권에는 IPSAS 40의 영업권 장부가액 공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8.2.5	<p>[의견요청사항(SMC)]</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공정가치보다 낮은 장부가액으로 측정되는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공정가치를 공시하는 것에 대한 의견요청사항(SMC) 제안
8.2.6	<p>[다른 IPSAS 기준서의 수정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D 79에 의한 다른 IPSAS 기준서의 수정사항 검토
8.2.7	<p>[결론도출근거(BC)]</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PSASB의 논의사항과 결정사항을 반영하는 결론도출근거(BC) 개발

세부 안건	주요 논의사항
8.2.8	[공공부문 특성을 반영한 IFRS 5의 용어 정의 수정] • ‘현금창출단위’ 용어를 IPSAS 26, ‘현금창출자산의 손상’ 기준서의 ‘현금창출단위’로 정의할 것
8.2.9	[ED 79,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공공부문 중단영업’ 승인] • ED 79의 승인

사. ED 78, IPSAS 17 ‘유형자산’ 개정, 유산자산, 사회기반시설 자산

(ED 78, ‘IPSAS 17’ Update, Heritage and Infrastructure)

□ 배경 및 목적

- (배경) 유산자산, 사회기반시설 자산, 측정 프로젝트의 결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IPSAS 17, ‘유형자산’의 개정이 요구됨
- (목적) IPSAS 17, ‘유형자산’ 기준서 개정

□ 진행 경과

프로젝트 단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Project Brief (과제 제안)																								
Consultation Paper (자문보고서)			*	*	*	*	*	*																
Exposure Draft (공개초안)																								
IPSAS (기준서 발표)																								

주: 별도 표시가 없는 경우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 진행, 유산자산 프로젝트 진행 경과는 * 표시

□ 주요 논의사항

세부 안건	주요 논의사항
9.2.1	<p>[사회기반시설 자산 및 유산자산의 연계 이슈 개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3분기 협의결과 22개의 이슈가 도출되었으며 2분기와 3분기에 걸쳐 논의됨
9.2.2	<p>[ED 78의 변경 사항 개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7월 개최된 Check-In 회의에서 IPSASB는 ED 78의 변경을 지시함 - ED 78의 변화된 항목 중 Staff는 회계정책 선택(accounting policy choice) 및 측정지침 유지(retention of measurement guidance)를 중요한 변경사항으로 지정
9.2.3	<p>[유산자산의 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산자산의 통제와 관련된 지침은 Q&A 형식으로 실무적용지침에 수록되어야 함 - 유산자산의 보유 형태 및 보유 기간에 따른 통제 여부에 대한 지침 제공
9.2.4	<p>[후속 지출의 자산화 혹은 비용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속 지출의 자산화와 관련된 지침은 실무적용지침에 수록되어야 함 - (유산자산) 긴 내용연수와 대체불가능성으로 인해 인식이 불가능한 유산자산은 후속 지출이 IPSAS 17 인식 기준에 부합할 경우 이를 자산화하는 실무적용지침을 제공 - (사회기반시설 자산) 기존 기준서의 지침이 충분하며, 상호 연관된 자산의 복잡성에 따른 이슈는 기준서의 지침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님
9.2.5	<p>[원가의 자산화 임계치(Capitalization Threshold)]</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연수가 단일 보고기간을 초과하는 자본화 대상 지출이 모두 자본화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 자산화 임계치에 미달하는 원가는 재무제표에 보고된 정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비용 회계처리될 수 있음 <p>9.2.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화 임계치 설정 시 고려할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반목적재무보고의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 (2) 실질적으로 모든 자산화 가치의 포착 (3) 보고된 정보의 품질 (4) 효율성 • 원가의 인식과 관련된 지침은 실무적용지침에 수록되어야 함

세부 안건	주요 논의사항
9.2.6	<p>[측정: 유산자산 및 대체가능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산자산의 현행원가 측정과 관련된 지침은 실무적용지침에 수록되어야 함 - 공공부문실체의 유산자산 보유 목적은 유산자산의 재무능력(Financial Capacity)이 아닌 운영능력(Operational Capacity)이며, 측정 프로젝트는 운영 목적으로 보유한 자산의 현재가치는 현행원가를 이용해 측정하는 것으로 결정
9.2.7	<p>[사회기반시설 자산의 토지 분리 및 측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기반시설 자산의 토지 측정과 관련된 추가 본문 지침은 불필요하며 실무적용지침을 추가함 - 사회기반시설 자산의 토지가 사회기반시설 자산과 별개의 자산이고 별도로 회계 처리되어야 한다는 지침은 이미 충분함
9.2.8	<p>[감가상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이 비한정 내용연수를 갖는 경우 매년 손상검사를 해야 한다는 본문을 추가함
9.2.9	<p>[별도로 감가상각되어야 할 사회기반시설 자산의 구성요소 식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본문에 사회기반시설 자산을 구성하는 유의적인 부분을 별도로 감가상각한다는 규정이 명확히 제시됨 • 관련된 실무적용지침을 추가하여 사회기반시설 자산의 유의적인 부분을 식별하는 방법을 구체화할 것
9.2.10	<p>[상태기준 정보의 사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기반시설 자산의 감가상각 측정에 상태기준 정보(condition-based information)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는 지침은 실무적용지침에 수록되어야 함 - 상태기준 정보를 감가상각 측정에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기반시설 자산의 구성요소가 체계적인 자산관리계획을 통해 유지되는 경우 (2) 정기적인 상태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
9.2.11	<p>[자산관리 미흡(관리 지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관리 미흡(under-maintenance of assets)의 정의와 자산관리 미흡이 부채로 인식되지 않아야 한다는 지침은 실무적용지침에 수록되어야 함 - 자산관리 미흡(under-maintenance of assets)은 자산관리의 부재로 자산의 서비스 잠재력 또는 내용연수가 감소하는 현상을 뜻함

세부 안건	주요 논의사항
9.2.12	<p>[유산자산 및 사회기반시설 자산의 손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산자산의 손상, 사회기반시설 자산 네트워크의 일부분이 훼손된 경우 사회 기반시설 자산 네트워크가 손상인지 여부를 다루는 지침이 충분한지 검토함 • 현행 IPSAS 21, ‘비현금창출 자산의 손상’과 IPSAS 26, ‘현금창출 자산의 손상’에서 손상 관련 권위적인 지침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음
9.2.13	<p>[제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기반시설 자산의 일부가 지속해서 대체되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 제거를 뒷받침하는 상세한 회계 기록이 없는 경우의 제거 관련 이슈를 검토함 - 기존 기준서 본문에 관련 지침이 충분하므로 추가 지침은 불필요함
9.2.14	<p>[유산자산 및 사회기반시설 자산의 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체불가능성과 긴 내용연수로 인해 측정이 불가능한 유산자산은 주석으로 공시되어야 하며 이러한 추가 공시 지침은 실무적용지침에 수록되어야 함

아. 자연자원 (Natural Resources)

□ 배경 및 목적

- (배경) 자연자원의 정확한 측정은 환경 지속가능성 및 기후변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관련된 지침이 부족함
 - 2018년 9월 정례회의에서 신규 공공부문특정 프로젝트(new public sector specific project)에 편입 결정
 - 2020년 1분기 정례회의에서 프로젝트 개요 승인
- (목적) 자연자원의 인식과 측정 관련 이슈 연구 및 회계처리 방법 고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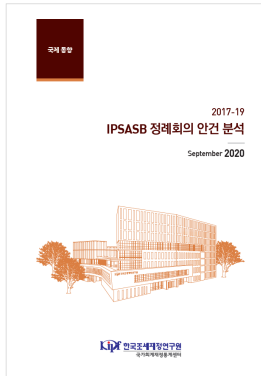
□ 진행 경과

프로젝트 단계	2020년			
	1Q	2Q	3Q	4Q
Project Brief(과제 제안)				
Consultation Paper(자문보고서)				
Exposure Draft(공개초안)				
IPSAS(기준서 발표)				

□ 주요 논의사항

세부 안건	주요 논의사항
10.2.1	<p>[탐사면허(exploration licenses)를 발행하는 국가 권한(sovereign power)의 자산 인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층토 자원의 탐사면허를 발행하는 해당 국가의 권한은 개념체계에서 규정 한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음
10.2.2	<p>[하층토 자원 검토 - 법률체계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3월 정례회의 결과 IPSASB 위원 및 T/F 대상으로 한 비공식 설문 이 2020년 10월 15일까지 진행 중이며 설문문항은 다음과 같음 - 해당 국가의 토지 및 하층토 자원 관련 법률체계를 기술하시오 - 지면(surface)과 지면 아래(subsurface)에 대한 권리가 구분되어 있는가? - 지면(surface) 권리의 핵심 특징을 요약하여 기술하시오 - 하층토 자원의 회계처리에 대한 기타 이슈가 있는가? - 추가 참고자료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
10.2.3	<p>[자문보고서의 구조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F는 자문보고서의 구조를 작성했으며 IPSASB의 검토를 요청함
10.2.4	<p>[자문보고서의 서론 및 1장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F와 Staff는 자문보고서의 서론 및 1장을 작성했으며 IPSASB의 세밀한 검토를 요청함

3 『2017-19 IPSASB 정례회의 안건 분석』 발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이하 ‘센터’)는 국가회계 재무정보의 대외 신뢰성과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회계기준과 국가회계예규의 품질을 국제적인 수준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센터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공공부문에서 국제 표준의 위상을 가진 국제공공부문의회계기준(이하 ‘IPSAS’)의 최신 제·개정 이슈를 연구하고 벤치마킹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국제공공부문의회계기준위원회(이하 ‘IPSASB’)의 정례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석해 왔다.

센터는 IPSASB 정례회의 안건의 내용과 분석결과를 모은 『2017-19 IPSASB 정례회의 안건 분석』을 발간한다. 그동안 IPSAS의 최신 이슈에 대한 조사결과를 요약하여 분기별로 뉴스레터 및 홈페이지를 통해 간략하게 제공해왔으나, 프로젝트별로 진행사항을 쉽게 파악하기 어렵고, IPSASB의 이슈 접근 과정과 제·개정 근거를 상세하게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안건 모음집을 발간하게 되었다.

『2017-19 IPSASB 정례회의 안건 분석』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동안 센터에서 참석한 10번의 IPSASB의 분기별 정례회의의 출장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총 2개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1부의 ‘IPSASB와 IPSAS의 소개’는 IPSASB의 목표와 역할, IPSAS의 제·개정 과정, 국가회계기준과 IPSAS의 관계를 간략히 보여준다. 2부의 ‘2017~2019 IPSASB 안건분석보고서 모음(프로젝트별)’은 IPSASB 정례회의 안건의 내용과 분석결과, 국가회계기준에 대한 시사점을 담고 있는데, 이용자가 IPSASB에서 논의 중인 회계 이슈를 식별하고 찾아보기 용이하도록 IPSASB의 9개 제·개정 프로젝트를 기준으로 내용을 묶어 제공하고 있다.

〈2017~2019 IPSASB 안전분석보고서(프로젝트별)〉

IPSASB 프로젝트	2017				2018				2019				종합
	Q1	Q2	Q3	Q4	Q1	Q2	Q3	Q4	Q1	Q2	Q3	Q4	
① 수익 및 비교환비용		✓			✓	✓	✓		✓	✓	✓	✓	8
② 공공부문 특유 금융 상품		✓			✓					✓			3
③ 금융상품		✓			✓	✓							3
④ 사회보장급여		✓	✓			✓	✓	✓					5
⑤ 리스		✓	✓							✓	✓	✓	5
⑥ 공공부문 측정		✓	✓		✓	✓	✓	✓	✓			✓	8
⑦ 사회기반시설			✓							✓	✓	✓	4
⑧ 유산									✓	✓			2
⑨ 연차개선과제					✓								1

센터는 『2017-19 IPSASB 정례회의 안전 분석』을 통해 회계전문가와 학계,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IPSAS에 대한 인식과 저변이 확대되고 나아가 국가회계기준과 공공부문 회계기준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본 책자는 2020년 하반기에 배포될 예정이며, 해당 파일은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홈페이지(https://www.kipf.re.kr/gafsc/Publication/publication_Report/kiPublish/CA/Center/list.do)에서 자유롭게 다운로드할 수 있다.

4 『Enforcement Rule of Central 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s』 영문 국가회계기준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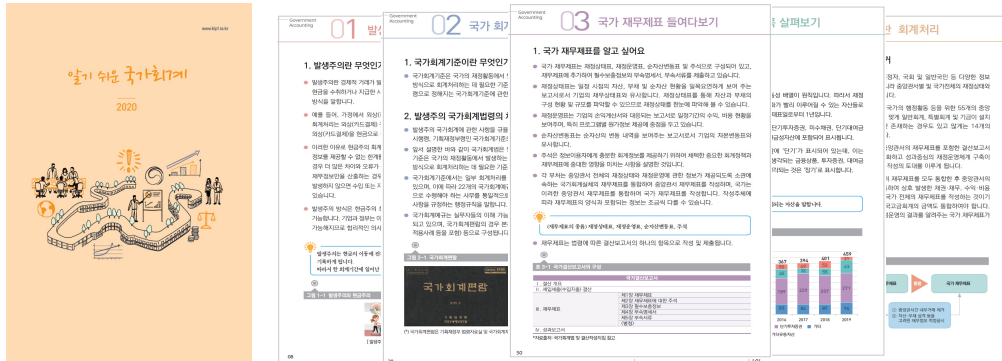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국가회계기준’)의 영문 번역본인 『Enforcement Rule of Central 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s』를 발간하였다. 그간 다양하게 사용되어 온 영문용어를 일관되게 정비하고, 국가회계의 특수한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해외 주요국 국가회계 용어 및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번역하였으며, 국가회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였다. 국내 사용자 및 연구자들을 위하여 조문별 한·영 비교표가 부록으로 첨부되어 있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Enforcement Rule of Central 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s』가 국제적으로 국가회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제공하는 좋은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센터는 향후에도 대내외 회계기준 연구를 확대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문 자료를 작성 배포할 계획이다.

본 책자는 2020년 10월 이후 배포될 예정이며, 해당 파일은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홈페이지(https://www.kipf.re.kr/gafsc/Publication/publication_Report/kiPublish/CA/Center/list.do)에서 자유롭게 다운로드할 수 있다.

5 『알기 쉬운 국가회계』 발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국가회계기준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자 2016년에 『알기 쉬운 국가회계』를 최초 발간한 이후 세부사항을 업데이트하여 매년 발간해 오고 있다. 『알기 쉬운 국가회계』는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국가회계의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국가회계 교육자료 등 다방면으로 활용되고 있다.



〈표지〉

〈내지〉

또한 『알기 쉬운 국가회계』는 발생주의 회계제도 기초 다지기, 국가회계제도 이해하기, 국가 재무제표 들여다보기, 주요 계정과목 살펴보기, 기타 특수한 회계처리 등 다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국가회계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였다. 별첨에는 2019회계연도 국가 재무제표와 국가회계 실제 현황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20년에 발간되는 『알기 쉬운 국가회계』에는 국가재정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국가 자산과 부채, 재정운영 등의 재무정보와 이러한 재무정보가 산출되는 과정을 제공하였다. 특히 국가회계의 발생주의 도입 이후 10여 년간에 걸친 변화를 담고 있어 우리나라 국가회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재정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 시기에, 『알기 쉬운 국가회계』가 국가회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길라잡이가 되기를 기대한다.

본 책자는 2020년 하반기에 배포될 예정이며, 해당 파일은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홈페이지(<https://www.kipf.re.kr/gafsc/Center/PR/PR2/gaBrochure/list.do>)에서 자유롭게 다운로드할 수 있다.

6 제1회 「KIPF 발생주의 회계 국제심포지엄」 웹심포지엄 개최 안내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이하 '센터')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2020년 11월 3일 개최예정인 제1회 「KIPF 발생주의 회계 국제심포지엄」을 비대면(온라인)으로 개최한다.

국제심포지엄은 “공적연금 회계의 국가별 현황 및 쟁점: 한국, 프랑스, 스위스, 일본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국가재정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미래 재정 건전성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공적연금의 회계정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센터는 자체 수행한 OECD 국가별 사례조사를 토대로 회계처리가 상이한 프랑스, 스위스, 일본을 대상으로 위탁조사를 진행했으며 연구담당자 및 국내·외 회계 전문가가 본 국제심포지엄의 연사 및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올해 제1회를 맞이하는 「KIPF 발생주의 회계 국제심포지엄」은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성과확산 및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의 연속성을 제고하고자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본 국제심포지엄을 통해 국내·외 공공부문회계 실무자와 전문가들이 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실질적 활용과 제도개선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웹심포지엄으로 진행될 본 행사는 11월 3일 14:00~16:30에 실시간으로 스트리밍될 예정이며, 심포지엄 접속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홈페이지(<https://www.kipf.re.kr/gafsc/index.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1회 KIPF 발생주의 회계 국제심포지엄
공적연금 회계의 국가별 현황 및 쟁점
: 한국, 프랑스, 스위스, 일본을 중심으로

2020. 11. 3. (화) 14:00~16:30
 웹심포지엄 실시간 진행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 | 일시 : 2020. 11. 3.(화) 14:00~16:30
- | 진행 : 웹심포지엄 실시간 진행
- | 주최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 | 진행순서

사회자: 문창오 부소장(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시간	세부내용
13:40~14:00	• 사전등록
14:00~14:20	• 환영사: 김유환 KIPF 원장 • 업무협약 체결식 KIPF(한국조세재정연구원) - ZHAW(스위스 취리히응용과학대학)
14:20~15:00	기조 발표 (OECD 국가의 공무원연금회계처리 다양성) 김완희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
	스위스의 공적연금 회계(Accounting for Pensions in the Public Sector in Switzerland) Andreas Bergmann 교수, ZHAW(스위스 취리히응용과학대학)
	프랑스의 공적연금 회계(Accounting for Pensions in the Public Sector in France) Fabienne Colignon, CNoCP(프랑스 국가회계기준위원회)
15:00~15:05	Refreshments
15:05~15:35	일본의 공적연금 회계 (Overview of Public Pension Accounting in Japan) Ryota Kaneko 교수, 일본 국학원대학(Kokugakuin University)
	한국의 공무원 연금제도 및 개선과제 김봉환 교수, 서울대 행정대학원
15:35~15:40	Refreshments
15:40~16:20	• 좌담회: 유용한 연금회계정보 산출을 위한 논의 좌장: 정도진, 중앙대 교수 패널: 발표자 및 Ross Smith IPSASB 국장, 백승무 공무원연금공단 차장
	16:20~16:3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Tel. 044-414-2265 E-mail. mychoi@kipf.re.kr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02

국가결산 및 교육 동향

1 2020회계연도 재무결산 중간점검 실시

기획재정부는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와 함께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비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거래의 회계처리 적정성 여부를 중간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중간점검 항목은 작년과 달리 2019회계연도 감사원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기존의 '무형자산 취득금액의 비용처리 오류' 항목에 수선유지비를 추가하여 '자산 취득금액의 비용처리 오류' 항목으로 변경하였고, 총 6개 항목을 점검할 예정이다.

각 회계·기금별로 6개 항목(전기오류수정손익 적정성, 지출금반납금의 잡이익 계상 오류, 자산 취득금액의 비용처리 오류, 내부거래 제거, 건설중인자산 적정성, 계정과목 선택 오류)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한 후 보고서를 11월 6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였다. 단, 디브리인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은 중간점검 수행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와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중간점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10월 6일(화)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단,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참석자를 50명 이하로 제한함에 따라 9월 28일(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별도로 사전 촬영을 한 후 10월 7일(수)에 추가로 온라인을 통하여 실시간 스트리밍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설명회가 끝난 후에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각 부처 담당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이해도를 고취시킬 계획이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는 각 부처가 제출한 자체점검보고서를 취합·분석하여 부처별 점검 실적을 확인하고, 오류 조치율이 전년도 실적 미만인 기관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11월 중 자체보고회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2 『2020 재무결산 오류사례 해설』 발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기획재정부 및 한국재정정보원과 함께 『2020 재무결산 오류사례 해설』을 발간한다. 이번 책자는 작년에 발간했던 『2019 재무결산 오류사례 해설』에 감사원 지적사항, 『국가회계편람』 개정사항 및 디브레인 시스템 개선사항 등을 새로이 반영하며 이용자의 관점에서 좀 더 알기 쉽게 정리하였다. 디브레인 시스템 관련 내용의 정확성 향상을 위해 한국재정정보원이 공식적으로 발간에 참여하였으며 작년과 동일하게 ‘결산담당자용’은 한 권으로 ‘업무담당자용’은 ‘수입·지출’과 ‘국유재산·물품’ 두 권으로 나누어 출간할 예정이다.

결산담당자용은 ‘감사원 지적사례 통계’와 ‘감사원 연례적 지적사례 20선’ 및 ‘결산업무 단계별 오류사례’ 이렇게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감사원 지적사례 통계’에서는 과거 9년간(2011~2019년) 감사원 지적사례를 분석하여 유형별, 중앙관서별로 통계자료를 제시하였다.

‘감사원 연례적 지적사례 20선’에서는 매년 반복적으로 빈번히 발생한 지적사례 20개를 연례적 지적사례로 선정하여 각 사례별로 감사원 지적 발생원인과 점검 및 조치방안을 서술하였다. 2019회계연도에 발생한 감사원 지적 건수의 83%가 연례적 지적사례에 해당하므로, 결산담당자가 이를 활용하여 2020회계연도 결산을 대비한다면 감사원 지적을 감소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결산업무 단계별 오류사례’에서는 수정 전 시산표 마감 전부터 결산서 발행까지 결산업무 단계별로 발생하는 오류 유형 및 오류 정정방법 등을 제시하여 결산담당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업무담당자용의 ‘수입·지출’과 ‘국유재산·물품’은 업무담당자가 디브레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시킨 오류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및 오류정정 방법 등을 알기 쉽게 서술하여, 업무담당자로 인해 발생하는 재무제표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0 재무결산 오류사례 해설』은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홈페이지 (<http://gafsc.kipf.re.kr>)나 디브레인 게시판을 통해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3 2020년 국가회계 전문교육 실시 결과(3~9차)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지난 3분기 동안 국가회계 전문교육(1~10차)을 개최하였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실시간 온라인 방식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전국의 국가회계에 관심이 있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되었다.

각 과정은 차수별로 국가회계이론과정 2일, 국가회계실무과정 1일 등 총 3일의 교육과정으로 진행되었다. 국가회계이론과정 1일차에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심재영 명예교수, 강원대학교의 정광화 교수, 도원회계법인의 안섭 회계사가 차수별로 돌아가며 회계원리와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기초에 대해서 국가회계를 처음 접하는 대상자들이 알기 쉽게 설명하였으며, 이어서 진회계법인의 이재혁 회계사와 한길회계법인의 김상노 회계사가 국가회계제도의 주요 체계와 발생주의 국가회계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였다. 2일차에는 이정회계법인의 허웅 회계사가 세입세출거래와 복식부기, 결산조정과 발생주의에 대한 내용을 이해시키고, 마지막으로 2일간의 전체 교육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종합사례연습을 진행하며 수강생들의 지식을 향상시켰다.

3일차인 국가회계실무과정의 오전 시간은 수입·지출(1, 2, 4, 5, 6, 7, 8, 10차)과 국유·물품(3, 9차)으로 구분하여 각 담당자가 업무를 진행하면서 겪을 수 있는 오류사례를 미리 점검하고, 다양한 사례 경험을 갖춘 센터 회계사들의 강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고찰할 수 있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이어서 ‘국가재무제표 들여다보기’라는 주제로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회계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와 그동안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국가재무제표를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며 교육이 마무리되었다.



〈국가회계 전문교육 3차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8층 중회의실〉

4 2020년 국가회계 전문교육 안내(재무결산실무 과정)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2020회계연도 국가재무결산을 앞두고 오는 10월에 중앙부처 재무결산 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국가회계 전문교육(재무결산실무 과정)을 실시한다.

이번 과정은 재무결산 절차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2020회계연도 재무결산 업무 수행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교육 참석자는 본 교육을 통해 올해 국가결산의 방향과 주요 오류사항에 대한 처리방법 등을 학습하게 된다. 교육 1일차에는 '① 재무결산의 이해 ② 2020회계연도 재무결산 주요 유의사항 ③ 감사원 지적사례'를, 2일차에는 '① 내부거래제거 실무 ② 결산조정분개 ③ 결산보고서 작성'을 주제로 강의할 예정이다.

교육 강사로는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본 센터 결산교육팀 연구진이 참여한다. 결산교육팀은 국가결산 업무와 국가회계교육 사업을 중점 추진하기 위해 2018년도에 신설된 조직으로서, 발생주의·복식부기 국가회계제도의 시행 초기부터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가회계교육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올해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재택형) 교육으로 변경되어 2개 차수가 각 2일간 진행되며, 국가회계교육 홈페이지(<https://www.kipf.re.kr/edu/>)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재무결산실무 과정 일정〉

지 역	일 정	시 간	장 소	정 원
무관	10. 22.(목) ~ 10. 23.(금)	10:00 ~ 17:30	실시간 온라인 (재택형)	90명
	10. 29.(목) ~ 10. 30.(금)	10:00 ~ 17:30		90명

〈재무결산실무 과정 커리큘럼〉

일 자	교육과목	시간	주요 내용
1일차	재무결산의 이해	1.5	1. 국가회계의 의의와 도입과정 2. 국가회계 관련 법령 3.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연계 4.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2020회계연도 재무결산 주요 유의사항	2.0	1. 2020회계연도 재무결산 주요 유의사항 2. 국가회계편람 수정사항 3. 재무정보 조회 및 점검 방법 4. 수정전시산표 마감전 유의사항
	감사원 지적사례	2.5	1. 감사원 지적사례
2일차	내부거래실무	1.5	1. 내부거래의 의의 2. 내부거래 제거방식 3. 결산담당자 유의사항 및 처리방법
	결산조정분개	2.0	1. 국가회계 결산조정분개의 이해 2. 결산조정분개 오류사례
	결산보고서 작성	2.5	1. 결산작성지침 개요 2. 결산보고서 생성 3. 결산보고서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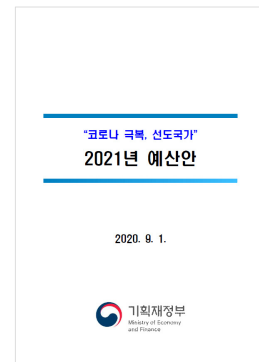
03

재정통계 동향

1 「2021년 예산안」 편성 및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등

가. 「2021년 예산안」 편성

기획재정부는 2020년 9월 1일(화), 2021년 예산안을 발표 하였다. 2021년 예산안의 기본 방향은 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② 미래 성장 동력 확보, ③ 포용적 고용·사회 안전망 공고화, ④ 국민 안전과 삶의 질 제고에 중점을 둔 한 국판 뉴딜 추진이다.



1) 재정 총량

2021년 예산안 중 국세수입은 법인세 부진 등으로 전년 대비 9.2조원 ($\Delta 3.1\%$) 감소하였으며, 국세외수입은 사회보장성기금 수입 확대 등으로 10.4조원(5.5%) 증가하였다. 총지출은 경제회복·한국판 뉴딜·국정과제 등 필수투자 요소의 차질 없는 뒷받침을 위해 확장적 재정기조가 지속될 예정으로, 전년 대비 8.5% 증가한 555.8조원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재정수지(GDP 대비 $\Delta 1.9\%$ p)는 악화되고 국가채무 비율(GDP 대비 6.9%p)은 증가될 것으로 예측된다.

(단위: 조원, %)

구 분	2020년 ¹⁾ (A)	2021년 ¹⁾ (B)	증감(B-A)	
				%
◇ 총수입	481.8	483.0	1.2	0.3
- 예산	319.9	311.4	△8.5	△2.7
(국세수입)	(292.0)	(282.8)	△9.2	△3.1
- 기금	161.9	171.6	9.7	6.0
◇ 총지출	512.3	555.8	43.5	8.5
- 예산	351.1	370.9	19.8	5.6
- 기금	161.2	184.9	23.7	14.7
◇ 재정수지(관리재정수지)	△71.5	△109.7	△38.2	
(GDP 대비 %)	(△3.5)	(△5.4)	(△1.9%p)	
◇ 국가채무	805.2	945.0	139.8	
(GDP 대비 %)	(39.8)	(46.7)	(6.9%p)	

주: 1) 2020년은 본예산, 2021년은 예산안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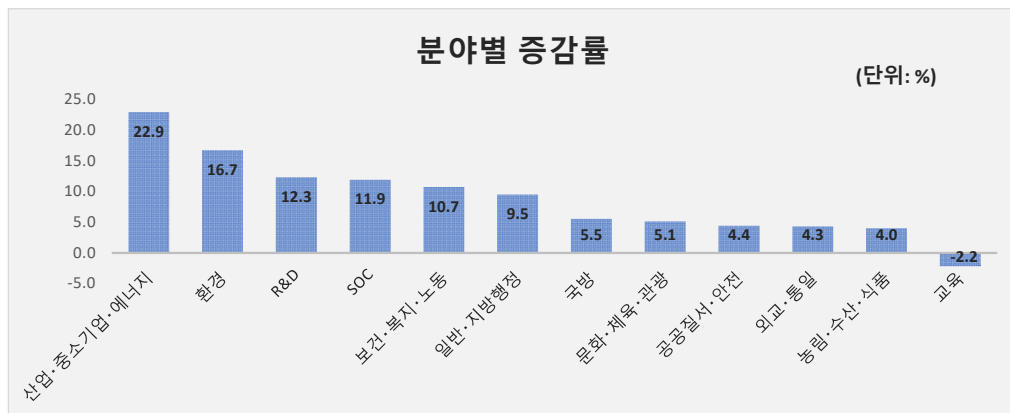
2) 분야별 자원배분

분야별 자원배분 내역을 살펴보면, ① 산업·환경·R&D 분야에서는 디지털·그린 뉴딜 분야의 핵심투자를 위해 12.3~22.9%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② 보건·복지·일자리 분야에는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10.7%의 증가세를 보이고, ③ SOC 분야는 디지털화·안전투자 확대에 중점을 두어 11.9%의 증가율을, ④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전력 고도화, 전투 역량 강화 등 스마트 강군 구축을 위해 5.5%의 증가율을 보였다.

(단위: 조원, %)

구 분	2020년(A)		2021년 정부안(B)		증감(B-A)	
	규모	비중	규모	비중	규모	증감률
◆ 총지출	512.3	100.0	555.8	100.0	43.5	8.5
1. 보건·복지·고용	180.5	35.2	199.9	36.0	19.4	10.7
2. 교육	72.6	14.2	71.0	12.8	△1.6	△2.2
3. 문화·체육·관광	8.0	1.6	8.4	1.5	0.4	5.1
4. 환경	9.0	1.8	10.5	1.9	1.5	16.7
5. R&D	24.2	4.7	27.2	4.9	3.0	12.3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3.7	4.6	29.1	5.2	5.4	22.9
7. SOC	23.2	4.5	26.0	4.7	2.8	11.9
8. 농림·수산·식품	21.5	4.2	22.4	4.0	0.9	4.0
9. 국방	50.2	9.8	52.9	9.5	2.7	5.5
10. 외교·통일	5.5	1.1	5.7	1.0	0.2	4.3
11. 공공질서·안전	20.8	4.1	21.8	3.9	1.0	4.4
12. 일반·지방행정	79.0	15.4	86.5	15.6	7.5	9.5

출처: 기획재정부, 「2021년 예산안」, 2020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출처: 기획재정부, 「2021년 예산안」, 2020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나.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제출

기획재정부는 2020년 9월 1일(화),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고 국회에 제출하였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혁신적 포용국가 성과 확산 및 과감한 재정혁신을 통해 재정의 효과성·지속가능성 제고를 기본방향으로 재정을 운용할 방침이다.

1)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 총량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재정수입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부진 등의 영향으로 재정수입이 당초 2019~2023년 계획상의 예측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돼, 2019~2023년 계획(연평균 3.9%)보다 0.4%p 감소한 연평균 3.5% 증가로 전망된다. 재정지출은 코로나19 이후 경제역동성 회복과 혁신적 포용국가 체감성과 확산, 국정과제 성과 가시화 등을 위한 지출소요가 확대될 전망이며, 연평균 5.7% 증가하는 수준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또한 관리재정수지는 세입기반 약화, 지출소요 확대로 2024년 관리재정수지는 △5% 증반 수준이 예상되며, 국가채무는 GDP 대비 채무비율 증가 속도를 점진적으로 완화하여 2024년 50% 후반 수준 이내로 관리할 계획이다. 「2020~ 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 총량은 다음과 같다.

(단위: 조원, %)

구분	2020년 ¹⁾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재정수입	481.8	483.0	505.4	527.8	552.2
재정지출	512.3	555.8	589.1	615.7	640.3
통합재정수지	△30.5	△76.2	△72.8	△83.7	△88.1
(GDP 대비, %)	(△1.5)	(△3.9)	(△3.6)	(△4.0)	(△3.9)
관리재정수지	△71.5	△109.7	△123.2	△128.2	△127.5
(GDP 대비, %)	(△3.5)	(△5.4)	(△5.9)	(△5.9)	(△5.6)
국가채무	805.2	945.0	1,070.3	1,196.3	1,327.0
(GDP 대비, %)	(39.8)	(46.7)	(50.9)	(54.6)	(58.3)

주: 1) 2020년은 본예산 기준

2) 재정혁신 방향 계획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재정위험 관리 체계화, 재정관리체계 혁신 등을 통한 다양한 재정혁신 방향을 제시하였다. 재정혁신 방향에는 재정 상황과 국민부담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초재정수지, 순채무 등 보완지표 도입 검토 및 국가자산 개념 정립 및 국가자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총괄 관리기능을 강화하여 국가자산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3) 전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 변동원인 분석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에는 2020년 이후 성장세 지속을 예상했으나, 2020년 들어 전례 없는 코로나 위기 확산으로 경제여건이 크게 악화되었다. 이로 인해 2019~2023년 계획 대비 세입기반은 약화된 반면,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지출소요는 확대되면서 재정여건이 악화되었다. 전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 비교 결과 2020년 재정수입은 △11.3조원, 재정지출은 33.4조원, 관리재정수지는 △39.4조원, 국가채무는 33.9조원 변동되었다. 이러한 재정여건하에서 2020~2024년 계획상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는 2019~2023년 계획 대비 일정수준 악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정여건 변동에 따른 재정 총량 변화 모습은 다음과 같다.

(단위: 조원,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재정수입	2019~2023년 계획	476.1*	482.0**	505.6	529.2	554.5	-
	2020~2024년 계획	-	470.7***	483.0	505.4	527.8	552.2
재정지출	2019~2023년 계획	469.6*	513.5**	546.8	575.3	604.0	-
	2020~2024년 계획	-	546.9***	555.8	589.1	615.7	640.3
통합 재정수지	2019~2023년 계획	6.5*	△31.5**	△41.3	△46.1	△49.6	-
	(GDP 대비)	(0.3)	(△1.6)	(△2.0)	(△2.1)	(△2.2)	-
	2020~2024년 계획	-	△76.2***	△72.8	△83.7	△87.9	△88.1
	(GDP 대비)	-	(△3.9)	(△3.6)	(△4.0)	(△4.0)	(△3.9)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관리 재정수지	2019~2023년 계획	△37.6*	△72.1**	△81.8	△85.6	△90.2	-
	(GDP 대비)	(△1.9)	(△3.6)	(△3.9)	(△3.9)	(△3.9)	-
	2020~2024년 계획	-	△111.5***	△109.7	△123.2	△128.2	△127.5
	(GDP 대비)	-	(△5.8)	(△5.4)	(△5.9)	(△5.9)	(△5.6)
국가채무	2019~2023년 계획	740.8*	805.5**	887.6	970.6	1,061.3	-
	(GDP 대비)	(37.1)	(39.8)	(42.1)	(44.2)	(46.4)	-
	2020~2024년 계획	-	839.4***	945.0	1,070.3	1,196.3	1,327.0
	(GDP 대비)	-	(43.5)	(46.7)	(50.9)	(54.6)	(58.3)

주: * 2019년 국회확정 본예산 / ** 2020년 정부안 / *** 3차 추경 국회확정기준

2 「2020~2024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출

가. 「2020~2024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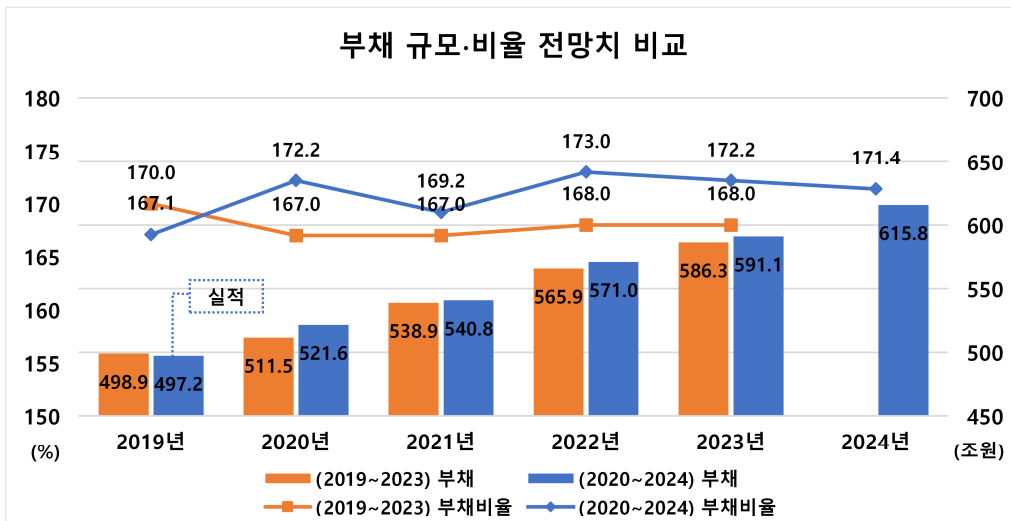
기획재정부는 2020년 9월 3일(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국가재정법」에 따라 「2020~2024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작성 대상인 39개 주요 공공기관의 총자산은 LH·한전·도로공사 등을 중심으로 국가 인프라가 확충되어 2020~2024년간 자산은 150.6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부채비율(부채/자본)은 2024년 171.4%로 전망하였다.

(단위: 조원, %)

구분		2019년 (실적)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0~2024년 중장기	자산	794.6	824.5	860.4	901.0	934.2	975.1
	부채	497.2	521.6	540.8	571.0	591.1	615.8
	부채비율	167.1	172.2	169.2	173.0	172.2	171.4

나. 지난해 계획과 비교

지난해(2019~2023년) 계획 대비 올해(2020~2024년)계획의 부채 규모·비율이 증가하였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수입 감소·지출 증가 및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 등 공공기관의 역할 증대, 한전·LH 등 주요 기관의 투자 확대 등에 기인하였다. 다만, 2024년까지 부채비율은 171% 수준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다.



출처: 기획재정부, 「2020~2024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2020.9.1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3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재정통계 근거 법령 마련

국가재정의 장기적 운용과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가재정법」의 개정이 2020년 3월 31일 공포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여러 개정 사항들 중 정부가 매년 1회 이상 공표하여야 하는 재정정보에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재정통계를 추가하고, 매 회계연도 결산을 기준으로 작성할 것을 명문화하였다(「국가재정법」 제9조 제2항).

또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작성 대상기관들의 구분방식을 원가보상률과 정부판매 비율의 기준으로 명시함으로써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국가재정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국가재정법」 및 「국가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그동안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및 기획재정부에서 작성하던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재정통계 산출의 법적 근거와 구체적 산정범위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국가재정법」 제9조(재정정보의 공표)

(상략)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이하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재정통계”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와 제3호에 관하여는 해당 기관 및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31.>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2. 다음 각 목의 기관 중 시장성이 없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 다. 그 밖에 공영방송사·국립대학법인 등 공공성이 인정되는 법인
3. 제2호 각 목의 기관 중 시장성이 있는 기관(금융을 다루는 기관은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재정정보의 공표 또는 제2항에 따른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재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후략)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5조(재정정보의 공표)

(상략)

③ 법 제9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 경우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 <신설 2020. 7. 1.>

1. 법 제9조제2항제2호의 경우: 생산원가에서 판매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원가보상률”이라 한다)이 50퍼센트 이하이거나 판매액에서 정부대상 판매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정부판매비율”이라 한다)이 80퍼센트 이상일 것
2. 법 제9조제2항제3호의 경우: 원가보상률이 50퍼센트를 초과하거나 정부판매비율이 80퍼센트 미만일 것

(후략)

4 2019회계연도 준정부기관 결산결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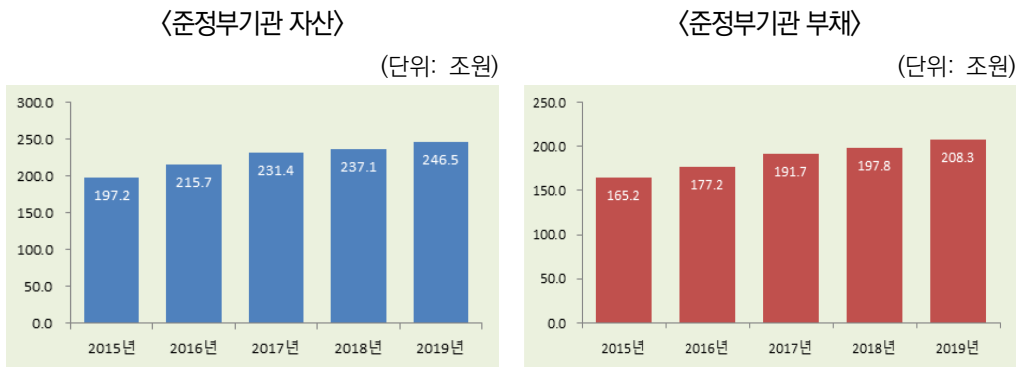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산을 수행하고 국회에 결산서를 제출하게 된다. 2019회계연도 결산 대상 준정부기관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89개 기관이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2020년 8월 국회에 제출된 2019회계연도 준정부기관 결산서 내용을 바탕으로 결산결과를 분석하였다.

2019회계연도 준정부기관의 자산은 246.5조원, 부채는 208.3조원이고, 매출액은 162.9조원, 당기순손실은 1.0조원이다.

가. 자산과 부채

준정부기관의 자산 및 부채의 5개년 추세는 다음과 같다.



주: 준정부기관 대상 변동 및 회계기준 변경 등으로 재무제표가 재작성되어 전년도에 국회에 제출한 결산서와 일부 차이가 발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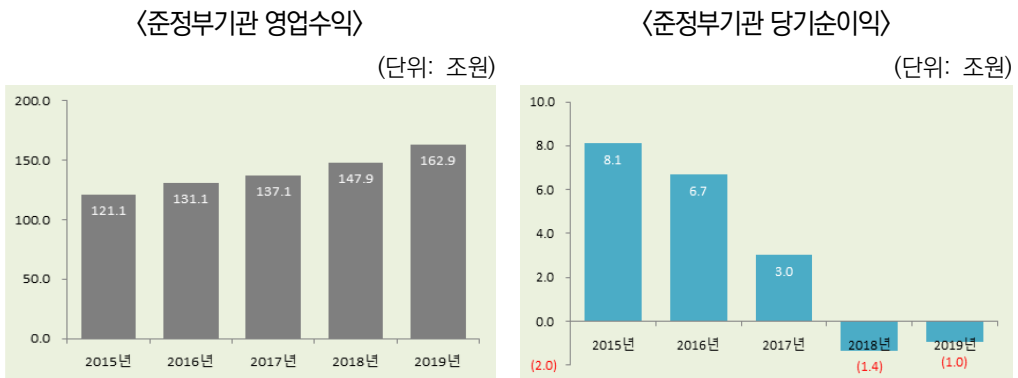
출처: 기획재정부, 「준정부기관 결산서」, 각 연도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준정부기관의 자산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대출채권 증가 등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다. 2019회계연도 기준 준정부기관 총자산의 53.4%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차지하고 있고, 총자산 변동액 9.4조원 중 8.4조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자산변동에 따른다.

준정부기관의 부채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장성 확대에 따른 보험급여충당부채의 증가 등으로 인해 상승 추세이다.

나. 영업수익과 당기순이익

준정부기관의 영업수익 및 당기순이익의 5개년 추세는 다음과 같다.



주: 준정부기관 대상 변동 및 회계기준 변경 등으로 재무제표가 재작성되어 전년도에 국회에 제출한 결산서와 일부 차이가 발생함

출처: 기획재정부, 「준정부기관 결산서」, 각 연도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준정부기관의 영업수익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건강보험료율 인상, 직장가입자 수 증가 및 보수월액 상승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수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2015년 47.2조원, 2019년 64.1조원으로 4년 동안 16.9조원 증가), 국민연금 수급자 증가로 인해 국민연금공단의 출연금 수익도 증가하였다(2015년 15.7조원, 2019년 23.3조원으로 4년 동안 7.7조원 증가).

준정부기관의 당기순이익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당기순손익 변동의 주된 원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며, 특히 2016년 이후 의료수가 인상 및 의료보장 확대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영업비용 증가로 인해 준정부기관의 당기순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2019년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당기순손실은 지속되었으나 당기순손실 폭은 감소하였다(2018년 △3.9조원, 2019년 △3.6조원으로 2,688억원 손실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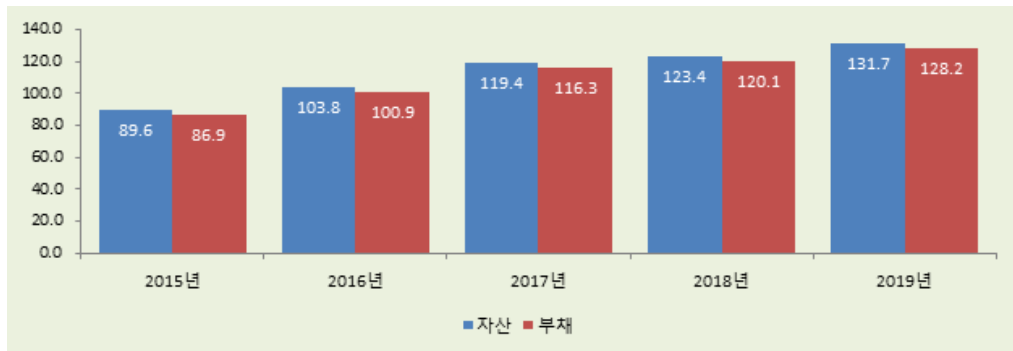
다. 주요 준정부기관 증감 분석

1)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19회계연도 준정부기관 총자산 중 53.4%, 총부채 중 6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산과 부채의 과거 5개년 추세는 다음과 같다.

〈자산·부채〉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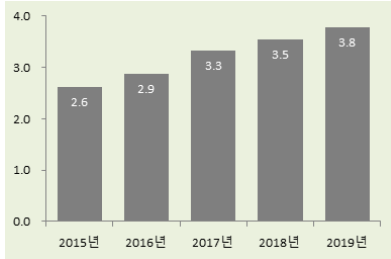


출처: 기획재정부, 「준정부기관 결산서」, 각 연도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15년 안심전환대출(저금리, 고정금리, 장기분할상환) 시행으로 자산과 부채가 크게 증가하였다. 주택담보대출 확대에 따른 대출채권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주택저당증권 발행으로 유동화부채가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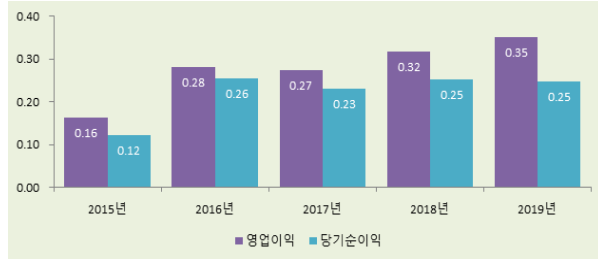
〈영업수익〉

(단위: 조원)



〈영업이익·당기순이익〉

(단위: 조원)



출처: 기획재정부, 「준정부기관 결산서」, 각 연도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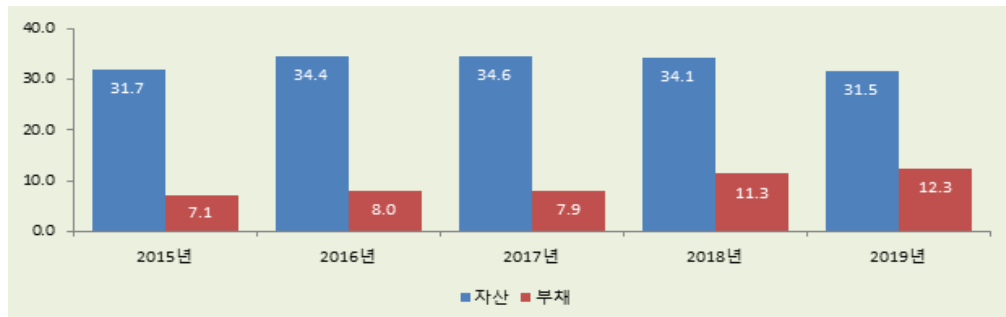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담보대출 확대로 대출채권 이자수익이 늘어 영업수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유동화부채 증가에 따른 이자비용도 동시에 증가하여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비슷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2019년의 경우 대출채권 증가로 순이자과 수수료수익이 증가하였지만 법인세 비용 증가 등의 이유로 당기순이익은 전기 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회계연도 준정부기관 총자산 중 12.8%, 총부채 중 5.9%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산과 부채의 과거 5개년 추세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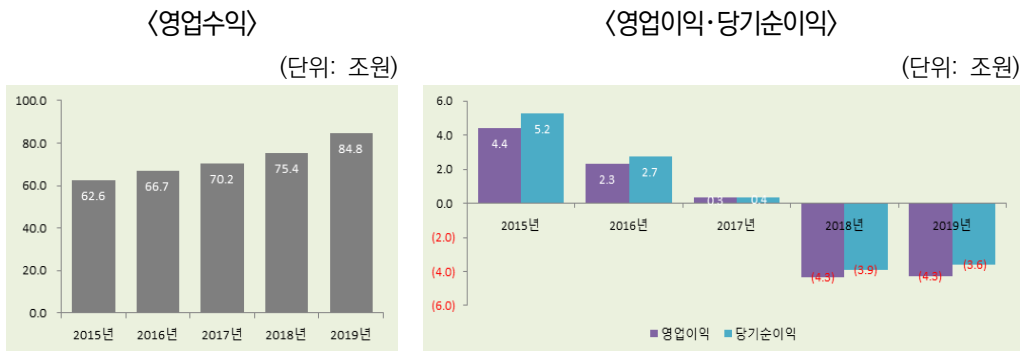
〈자산·부채〉

(단위: 조원)



출처: 기획재정부, 「준정부기관 결산서」, 각 연도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속적인 보험료수입 증가 등으로 자산이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18년 이후 보장성 확대에 따른 보험급여비 증가로 자산은 감소하고, 보험급여충당부채 증가 등으로 부채는 증가하고 있다.



출처: 기획재정부, 「준정부기관 결산서」, 각 연도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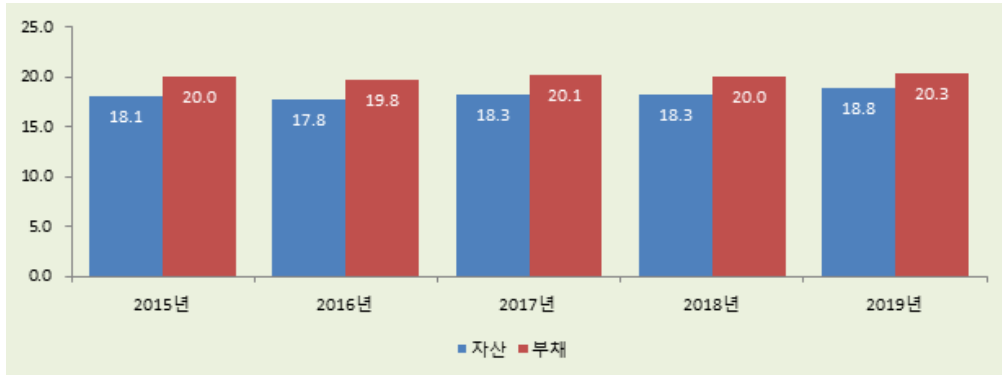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 수 증가 및 보수월액 상승 등으로 보험료수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의료수가 인상 및 의료보장 확대에 따라 영업비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영업비용 증가율이 영업수익 증가율을 상회함에 따라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2019년도에는 직장가입자 수 증가 및 정부지원금 등으로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 폭이 소폭 감소하였다.

3)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19회계연도 준정부기관 총자산 중 7.6%, 총부채 중 9.8%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산과 부채의 과거 5개년 추세는 다음과 같다.

〈자산·부채〉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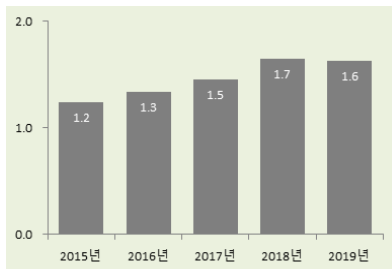


출처: 기획재정부, 「준정부기관 결산서」, 각 연도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경우 2019회계연도 기준으로 비유동자산이 자산의 97.3%를 구성하며, 대부분 유형자산(건축물 및 건설중인자산 등)과 무형자산(사용수익기부자산 등 용역운영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산 및 부채는 고속철도 자체 사업비 증가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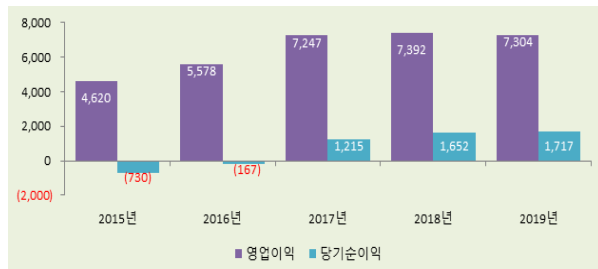
〈영업수익〉

(단위: 조원)



〈영업이익·당기순이익〉

(단위: 억원)



출처: 기획재정부, 「준정부기관 결산서」, 각 연도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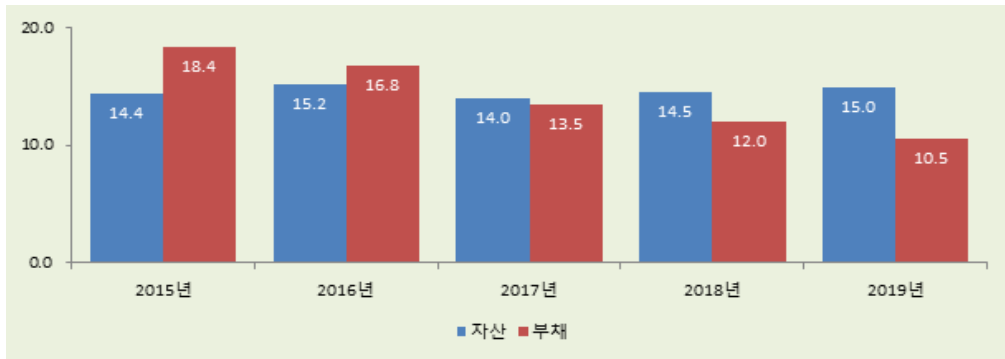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영업수익은 선로사용료 및 임대수익 증가 등의 영향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고속철도 선로사용료(선로 사용료에서 유지·보수비용을 차감)가 고속철도 자체 사업비 조달을 위한 사채 이자에 미달하여 2016년까지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다. 2017년에는 철도운영자 경쟁체제 도입(SR 운영) 및 수서발 고속철도의 이용객 증가로 인해 선로사용료가 증가하였고, 2019년에는 일반철도 선로사용이익 및 임대수익의 감소 등으로 영업수익 및 영업이익은 감소하였으나, 이자율 하락에 따른 금융비용의 감소로 당기순이익은 소폭 증가하였다.

4)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는 2019회계연도 준정부기관 총자산 중 6.1%, 총부채 중 5.1%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산과 부채의 과거 5개년 추세는 다음과 같다.

〈자산·부채〉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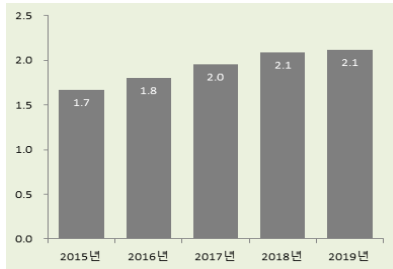


출처: 기획재정부, 「준정부기관 결산서」, 각 연도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예금보험공사의 자산은 큰 변동이 없으나, 부채의 경우에는 2011년 이후 대규모 저축은행 구조조정 등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금융부채가 증가하여 2016년까지 자본잠식 상태였다. 예금보험료, 파산배당, 이월자금 등으로 발생한 자금으로 지속적으로 금융부채를 상환하여 2017년에는 저축은행 사태로 인해 발생한 예보기금의 순자산 부족 상황이 6년 만에 해소되었다. 2019년의 경우 보험료수입 등으로 자산이 증가하고 금융부채 상환 등으로 부채가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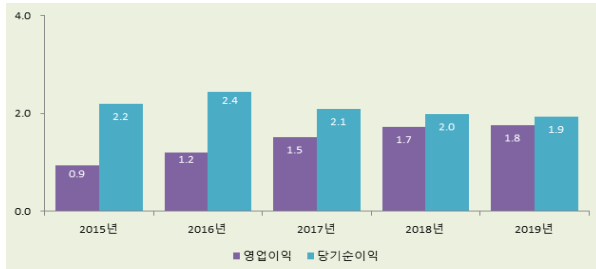
〈영업수익〉

(단위: 조원)



〈영업이익·당기순이익〉

(단위: 조원)



출처: 기획재정부, 「준정부기관 결산서」, 각 연도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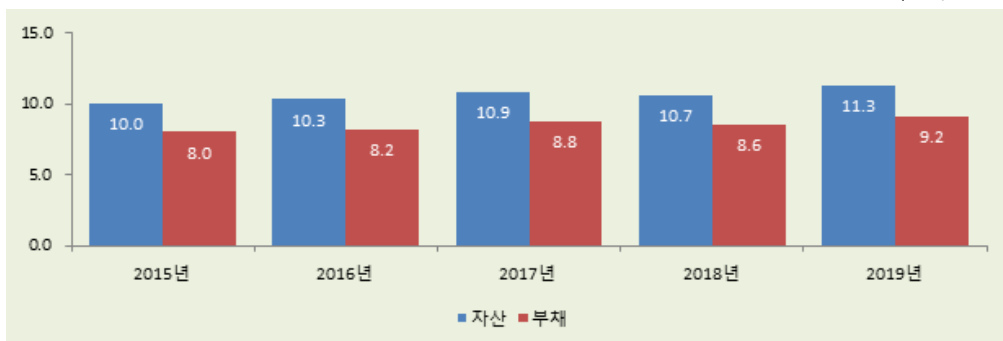
예금보험공사의 보험료수익 및 운용수익 증가 등으로 영업수익은 증가 추세이며, 지속적인 금융부채 상환으로 이자비용이 감소하여 영업이익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

5)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는 2019회계연도 준정부기관 총자산 중 4.6%, 총부채 중 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산과 부채의 과거 5개년 추세는 다음과 같다.

〈자산·부채〉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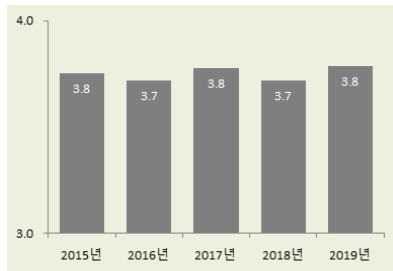


출처: 기획재정부, 「준정부기관 결산서」, 각 연도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촌진흥청의 종전부동산 개발사업 및 농지은행 사업 확대로 인해 자산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이에 따른 사업비 조달을 위한 사채발행으로 부채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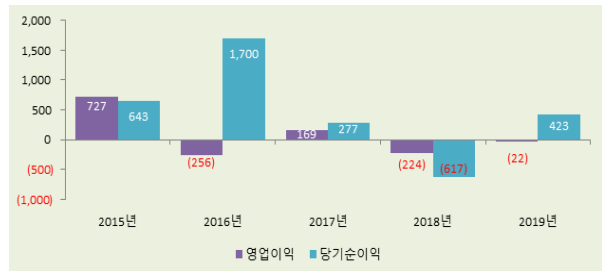
〈매출액〉

(단위: 조원)



〈영업이익·당기순이익〉

(단위: 억원)



출처: 기획재정부, 「준정부기관 결산서」, 각 연도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한국농어촌공사는 4대강 사업종료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2014년을 제외하고는 용수관리 및 생산기반사업 등 사업량 변동으로 인한 매출이 변동하고 있으나 큰 변화는 없는 추세이다. 2016년에는 구사옥 매각에 따라 일시적인 영업외수익 증가로 당기순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2018년에는 영업이익 감소 및 법인세추납액 등으로 당기순손실이 크게 발생하였고, 2019년에는 용수관리사업, 생산기반정비사업 등의 매출 증가로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유형자산처분이익 등으로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1,040억원 증가하였다.

각 자료는 국회에 제출된 기관의 재무정보를 활용하였다. 기금계정 재무정보 및 재무제표 재작성 등으로 인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공시된 자료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04

공익법인회계 동향

1 공익법인 관련 2020년 세법 개정안

정부는 지난 7월 22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후, 8월 25일 국무회의에서 「2020년 세법개정안 정부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공익법인의 과세체계를 개선하고 공익법인의 공익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성실공익법인 구분 폐지

현 「상증법」에서는 일반공익법인과 성실공익법인으로 구분하고, 출연받은 주식에 대한 상속·증여세 면제 한도를 달리 적용해 왔다. 개정안에서는 일반·성실공익법인을 공익법인으로 통합하였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모든 공익법인은 지분의 10%까지 상속·증여세가 면제되지만, 특정 요건(사후관리) 위반 시 5%로 제한된다.

현 행		개 정 안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에 대한 상속·증여세 면제 한도		□ 일반공익법인과 성실공익법인을 공익법인으로 통합	
구 분	한 도	구 분	한 도
성실공익법인	10%	공익법인	10%*
의결권 불행사 & 자선·장학·사회복지사업 성실공익법인	20%	의결권 불행사 & 자선·장학·사회복지사업 공익법인	20%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인 성실공익법인	5%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인 공익법인	5%
기타 일반 공익법인	5%		

* ①~⑤ 사후관리 위반시는 5%
 ① 운용소득을 1년내 80%이상 사용
 ② 자기대부거래 금지
 ③ 출연자·특수관계인 이사 취임 금지
 ④ 정당한 대가없이 특수관계법인 광고·홍보 금지
 ⑤ 출연재산가액의 1% 상당액 이상 사용의무

출처: 기획재정부, 「2020년 세법개정안 상세본」, 2020.

성실공익법인제도를 별개로 운영하지 않고, 모든 공익법인을 통합 관리하면서 성실공익법인 요건이 공익법인의 사후관리 요건으로 전환되었다. 또한 출연재산가액의 1% 상당액 이상을 사용하도록 하는 요건도 추가되었다.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5% 초과하여 보유 가능한 공익법인(성실공익법인)의 요건 ① 운용소득을 1년내 80%이상 사용 ② 자기내부거래 금지 ③ 출연자·특수관계인 이사 취임 금지 ④ 정당한 대가없이 특수관계법인 광고·홍보 금지 ⑤ 외부회계감사의무 ⑥ 전용계좌 개설·사용 ⑦ 결산서류 공시 ⑧ 장부 작성·비치 <추 가>	<input type="checkbox"/> 단순협력의무 관련 요건은 사후관리 의무로 전환하되, 공익지출 강화를 위한 요건 추가 •(좌 등) •요건 ⇒ 사후관리 의무 (위반시 가산세 부과) •출연재산가액의 1% 상당액 이상 사용의무

출처: 기획재정부, 「2020년 세법개정안 상세본」, 2020.

성실공익법인의 사후관리 확인제도는 신고제로 전환되었다. 대상은 주식을 5% 초과 보유하는 공익법인과 총재산가액의 30%를 초과하여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는 공익법인이다. 해당 공익법인은 매년 국세청장에 신고해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p>□ 공익법인 사후관리 확인제도</p> <p>•(대상) 성실공익법인</p> <p>•(기간) 매 5년</p> <p>•(확인자) 지방국세청장</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 공익법인 사후관리 신고제 전환</p> <p>•대상: 다음 ①, ②</p> <p style="padding-left: 20px;">* 구체적 대상범위는 시행령에 규정</p> <p>① 특정주식을 5% 초과하여 출연·취득하고 상속·증여세를 면제받은 공익법인</p> <p>② 총재산가액의 30%*를 초과하여 특수관계 있는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는 공익법인</p> <p style="padding-left: 20px;">* 회계감사 등 일정요건 이행시 50%</p> <p>•(기간) 매년</p> <p>•(신고대상) 지방국세청장</p> <p>•(미신고 가산세) 자산총액의 0.5%*</p> <p style="padding-left: 20px;">* 가산세 한도 규정 적용(「국기법」 §49)</p>

출처: 기획재정부, 「2020년 세법개정안 상세본」, 2020.

(2) 공익법인 사후관리 의무 강화

운용소득의 의무사용 비율이 현행 70%에서 80%로 상향된다. 또한 기존에는 출연재산 의무사용 비율(3% 또는 1%)이 미달하는 경우 가산세 10%가 부과되었는데, 제재가 강화되어 1% 미달 사용한 경우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현 행	개 정 안
<p>□ 공익목적 지출에 대한 사후관리</p> <p>① 운용소득의 고유목적에의 의무사용 비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공익법인: 70% • 성실공익법인: 80% <p>② 출연재산 의무사용* 비율</p> <p style="margin-left: 20px;">* 주식 10% 초과 보유 성실공익법인: 출연재산의 3%</p> <p style="margin-left: 20px;">그 밖의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반시 제재 - 3% 또는 1% 미달사용액의 10% 	<p>□ 공익법인의 공익성 강화 촉진</p> <p>① 운용소득의 고유목적에의 의무사용 비율 상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법인: 80% <p>② 위반시 제재 강화</p> <p style="margin-left: 20px;">* (좌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여세 추가 부과 - 출연재산의 3% 미달 사용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산세: 미달 사용액 × 10% - 출연재산의 1% 미달 사용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가산세: 미달 사용액의 10% · ㉡ 증여세: 주식 5% 초과보유분

출처: 기획재정부, 「2020년 세법개정안 상세본」, 2020.

용도 외 사용이나 3년 이내 미사용 이외에 출연재산을 공익 목적에 사용하던 중 부득이한 사유 없이 사용을 중단한 경우도 사후관리의 위반사항에 추가되었다.

현 행	개 정 안
<p>□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사용 위반 사유</p> <p>① 직접 공익목적 사업의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경우</p> <p>②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공익목적 사업에 미사용*</p> <p style="margin-left: 20px;">* 법령상·행정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p>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 사후관리 위반사항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등) ③ 공익목적에 사용하던 중 부득이한 사유 없이 사용 중단

출처: 기획재정부, 「2020년 세법개정안 상세본」, 2020.

(3) 기타 개정사항

현재 기부금 단체를 법인세법에서는 법정·지정기부금단체, 소득세법에서는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등 각기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공익법인 또는 공익단체로 통일하였다.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기부금단체의 명칭 • 법인세법 - 법정기부금단체 - 지정기부금단체 • 소득세법 -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input type="checkbox"/> 기부금단체 명칭 통일] - 공익법인 - 공익단체

출처: 기획재정부, 「2020년 세법개정안 상세본」, 2020.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인 이사에 대한 제한 위반 시 가산세 계산방법이 변경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가장 늦게 취임한 이사의 경비부터 가산세를 부과했으나 개정안에서는 경비가 큰 특수관계인의 경비부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변경되었다.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특수관계인 이사에 대한 가산세 • (요건) 특수관계인 이사) 이사 현원 × 1/5 • (가산세) 특수관계인 이사에 대한 경비 - 가장 늦게 취임한 특수관계인 이사의 경비부터 가산세로 부과 - 취임 시기가 동일한 경우 경비가 큰 이사의 경비부터 가산세로 부과	<input type="checkbox"/> 가산세 계산방법 조정 • (좌 동) • (좌 동) - 경비가 큰 특수관계인 이사의 경비부터 가산세로 부과 - 경비가 동일한 경우 가장 늦게 취임한 이사의 경비부터 가산세로 부과

출처: 기획재정부, 「2020년 세법개정안 상세본」, 2020.

2 공익법인회계기준 전문가 간담회

2017년 12월 공익법인회계기준이 제정되고 2018 회계연도부터 공익법인회계기준이 시행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들은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중 일부 공익법인은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대표적인 예이다. 의료법인, 학교법인은 각 설립 법령에 별도의 회계기준이 존재하고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로 인해 의료법인·학교법인의 재무정보와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적용한 공익법인의 재무정보를 직접 비교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또한 공익법인회계기준을 기반으로 하는 국세청 공시를 위해 의료법인·학교법인의 재무정보를 전환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며, 이 과정에는 많은 실무적인 어려움 및 재무정보의 정합성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별도회계기준과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조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간담회를 준비하였다. 본 간담회에서는 “의료기관회계기준과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조화방안”을 주제로, 변영선 삼일회계법인 비영리법인지원센터장, 엄준식 삼정회계법인 상무, 최호윤 회계법인 더함 대표, 김완희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 박윤진 재정통계팀장이 참석하여 의료기관회계기준과 공익법인회계기준의 비교, 국세청 공시의 조화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공익법인회계기준 전문가 간담회(9.18.), 서울지방조달청 중회의실〉

1 감사원 결산검사에 따른 국가재무제표 오류유형 분석 및 개선방안



정 아 름
사회적가치연구원 측정연구팀장

본 오피니언은 연구자가 수행한 연구를 바탕으로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오류 유형을 전수 검토하여 반복 지적 오류에 대한 결산검사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연구의 내용은 연구자의 개인 의견이며,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힌다.

* 정도진·정아름, 「감사원 결산검사에 따른 국가재무제표 오류유형 분석 및 개선방안」, 『회계정보연구』, 제38권, 제2호, 2020, pp. 159~185.

본 뉴스레터에 수록된 내용의 원문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8eac867957d787b26aae8a972f9116fb

1. 서론

우리나라는 2011회계연도부터 국가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면서,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통해 국가재무제표의 적정성 및 정확성을 검토해 오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국회 및 언론 등에서 국가재무제표의 정확성 및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감사원의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에서 지적되는 오류 중 단순 회계처리 오류에 대한 지적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17회계연도에서는 감사원의 결산검사 지적 중 98%가 과거 연례적으로 지적한 오류 유형이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문적인 회계검사를 수행해야 하는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가 과거의 오류 유형을 반복 지적하며, 단순 오류를 지적하는 데 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반복 오류 지적은 국가재무제표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대한 불안감과 불신을 가져올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 시 지적되는 오류 사항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II.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 지적 오류 유형 분석

감사원은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 시 회계기준에 따라 국가재무제표의 적정성을 검토하며, 적정하게 작성되지 않은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해 지적하고 국가결산검사 보고서에 해당 지적 건별로 오류 사항을 보고하고 있다. 국가결산검사보고서 부록에는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 시 지적된 오류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요약된 오류 사항 및 금액을 정리하고 있다. 이때 국가재무제표 지적 오류 유형을 총 7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7가지 유형은 아래와 같다. 그런데 국가결산검사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7가지 오류 유형은 포괄적으로 분류되어 있어, 오류 유형을 보다 세분화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 1) 자산 누락 및 중복 계상 등 오류
- 2) 자산재평가 대손 등 자산 평가 관련 오류
- 3) 건설중인자산 대체 및 자본적 지출 등 자산취득 관련 오류
- 4) 부채 누락 및 중복계상 등 오류
- 5) 자산 부채 및 계정분류 오류
- 6) 수익 및 비용 인식 오류
- 7) 재무거래 미제거 등 재무제표 통합 조정 오류

감사원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오류 유형들을 심층 분석하기 위하여, 국가재무제표가 도입된 2011회계연도부터 2018회계연도까지 지적된 오류들을 전수 조사하여 약 52개의 유형으로 세분화하였다. 그중 누적 지적 건수가 5개 이상인 오류 유형은 <표 1>과 같이 총 26개이다. 특히, 가장 많이 발생한 ‘무형자산의 비용처리오류’와 ‘자산취득 관련 경비의 비용처리오류’는 자산을 비용으로 처리한 오류로서, 국가자산의 체계적 관리라는 국가재무제표의 주된 작성 목적을 위협한다.

그중에서도 연례적이고 반복 지적빈도가 높은 10가지 오류 유형을 추출할 수 있는데, 이는 <표 1>에서 제시하고 있는 오류 유형 중 상위 10가지 유형이다. 연례적이고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상위 10가지 오류 유형은 과거 8회계연도 동안 552건이며, 이는 총 지적 건수의 57%이다. 이는 국가재무제표에서 같은 유형의 오류가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 시 절반에 해당하는 건수가 기계적으로 기존 오류 유형을 재지적함을 시사한다.

<표 1> 국가재무제표의 주요 오류 유형

(단위: 건)

	오류 유형	건수	오류 유형	건수	
1	무형자산의 비용처리오류	70	14	자산이관처리 오류	18
2	자산취득 관련 경비의 비용처리오류	68	15	BTO 회계처리 오류	18
3	자산재평가 오류	67	16	유가증권 손상 오류	16
4	계정과목 선택 오류	61	17	퇴직급여충당부채 오류	15
5	자산누락 오류	58	18	위탁자산 회계처리 오류	13
6	대손충당금 설정 오류	50	19	재고자산 평가 오류	12
7	미지급금 미인식 오류	50	20	표준단가 산정 오류	10
8	소송충당부채 오류	45	21	내부거래 조정 오류	9
9	비배분비용 회계처리 오류	43	22	국세수익 오류	7
10	계정대체누락 및 분류 오류	42	23	BTL 회계처리 오류	7
11	유동성 분류 오류	38	24	이자비용 오류	6
12	기간귀속 오류	36	25	교부금 부채누락 오류	6
13	감가상각비 오류	25	26	리스회계처리 오류	5

자료: 감사원, 「2011-2018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됨

Ⅲ. 오류 유형 분석을 통한 결산검사 개선방안

감사원의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오류 유형의 경우 매뉴얼을 개발하여 사전검토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주요 오류 유형 10가지에 대해서 심층 분석하여 <표 2>와 같이 사전검토매뉴얼을 개발할 것을 제안한다.

<표 2> 주요 오류 유형별 사전검토매뉴얼

	주요 오류 유형	사전검토매뉴얼
1	무형자산의 비용처리오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출집행 내역서 중 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항목의 적요를 검토 • 연구개발비 또는 수선유지비와 같은 비용항목의 추세 분석 • 합계잔액시산표에서 월별 증가내역을 검토하고, 비경상적으로 많은 월의 세부내역을 확인
2	자산취득 관련 경비의 비용처리 오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계잔액시산표에서 소모품비와 지급수수료 등의 월별 증가내역을 검토 • 비경상적으로 금액이 많은 월의 세부내역을 추가적으로 확인 • 적요 기재내용 및 예산상 지출항목을 통해 자본적 지출 여부 판단
3	자산재평가 오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처의 재평가 결과와 dBrain의 재평가 결과의 비교 • 면적, 공시지가, 공정가액, 평가방법 등을 순차적으로 검토
4	계정과목 선택 오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잡손실, 잡이익, 선급금, 건설중인자산 등 지출 및 수입항목이 관련 계정과목과 연계된 것인지를 검토
5	자산누락 오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출집행 내역서에서 자산취득과 관련된 항목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 항목이 재정상태표에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확인 • 자산과 관련된 계약 및 인수 정보 등을 검토
6	대손충당금 설정 오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에 대해 대손추산액의 합리적 근거자료를 확인 • 이행기간이 장기이거나 금액이 큰 항목의 경우 추가적인 검토
7	미지급금 미인식 오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출의무 발생시점과 부채 인식시점이 일치하는지를 검토 • 지출의무가 확정된 부분이 재정상태표에 부채로 계상되어 있는지 확인
8	소송충당부채 오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처의 소송충당부채 설정기준에 따라 소송충당부채금액을 추정하고 해당 금액이 재정상태표에 적정히 인식되고 있는지를 검토 • 전기 소송충당부채가 존재한다면 반드시 현재 소송 진행상황을 확인 •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사건 여부 주의 필요

주요 오류 유형		사전검토매뉴얼
9	비배분비용 회계처리 오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정운영표의 비배분수익 또는 비배분비용으로 표시되는 항목 중 적 요를 통해 프로그램총원가나 프로그램수익으로 구분해야 하는 항목 이 있는지를 검토 감가상각비 항목이 비배분비용으로 표시되어 있는지를 집중 검토
10	계정대체 누락 및 분류 오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급금과 건설증인자산 계정과목의 세부명세서에서 취득완료 예정일 등 상세내역을 확인

IV. 결론

이상의 오류 유형 분석을 토대로 감사원의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매년 반복 지적되고 있는 오류 유형에 대해서는 오류 유형 별 검사매뉴얼을 개발하여 실지감사 이전에 사전검토를 활성화시킬 것을 제안한다. 반복되는 오류들을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실지감사에서는 보다 전문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사항에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결산검사 실지감사 시 전문적 판단이 동반되는 오류에 집중하는 것이 국가재무제표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나아가 국가재무제표의 활용성도 높이는 기초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국가재무제표가 도입된 2011회계연도부터 2018회계연도까지 감사원의 결산검사 시 지적된 960건의 오류들을 취합하여 반복 오류 유형을 식별함으로써, 국가재무제표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향후 감사원의 결산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함에 의의가 있다. 향후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와 관련된 의미 있는 연구가 활발해지길 기대한다.

06

특집

1 국회가 바라본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

다음은 2020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가 발행한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와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가 발행한 「2019회계연도 결산 총괄분석 I」 검토보고서의 내용 중 국가회계 재무결산과 관련된 주요 내용과 그에 대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국가회계팀의 의견을 요약한 것이다.

〈2019회계연도 국회 지적사항 요약〉

구분		주요 내용
국회 지적사항 (2019회계 연도)	예결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자기관에 대한 경영성과 및 재무성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공시 개선 •연금충당부채 거시경제 변수를 변경할 경우 그 효과를 충분히 공시
	예정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류수정액이 200.1조원에 이르는 국가재무제표 신뢰성 저하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을 중심으로 한 재무제표의 적정성 미흡 •감사원의 국가재무제표 감사 역량 강화 방안 필요 •전비품의 체계적인 관리 필요 •국민연금기금 등 4대 연금 유동자산 및 투자자산과 관련한 주석 공시 필요

본 뉴스레터에 수록된 내용의 원문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예결위)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G2Y0B0S6Y0D1R1C4U1L6C5P4T4Q6Q7&ageFrom=21&ageTo=21

(예정처) https://www.nabo.go.kr/Sub/01Report/01_01_Board.jsp

가. 예결위: 출자금 공시와 연금충당부채 거시경제 변수

1) 출자기관에 대한 경영성과 및 재무성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공시 개선

국가회계실체의 출자금은 법령 또는 정책적 목적에 의해 국가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출자지분으로서 다른 자산과는 성격이 상이한 측면이 있으므로, 출자한 기관의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공시의 방법을 개선하여 정보이용자에게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개별부처 결산보고서의 재무제표 부속서류로 공시되는 출자금명세서에 주요한 재무정보와 기중 거래내역 등 제공하는 정보를 보완하여, 정부가 출자한 사업의 운용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공시할 필요성이 있다.

〈2019회계연도 부처별 출자금 현황〉

(단위: 백만원)

중앙관서	출자대상기관	취득가액	투자증권 감액손실(누적)	장부가액	당기배당금 수익
교육부	한국 모태펀드 등	57,368	-	57,368	-
금융위원회	유동화회사	0	-	0	-
농림축산식품부	새만금 개발공사 등	1,522,700	-	1,522,700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 모태펀드 등	848,884	△6,630	842,254	-
보건복지부	한국모태펀드	80,000	-	80,000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 석유공사 등	12,984,563	△2,290,757	10,693,806	-
인사혁신처	(주)상록 골프앤리조트	100	-	100	-
고용노동부	한국모태펀드	17,500	-	17,500	-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한국 벤처투자 ^(주) 등	267,231	△14,985	252,247	1,126

중앙관서	출자대상기관	취득가액	투자증권 감액손실(누적)	장부가액	당기배당금 수익
국토교통부	한국 도로공사 등	59,002,605	-	59,002,605	617,493
기획재정부	한국토지주택 공사 등	46,059,328	△149,081	45,910,247	26,177
특허청	한국모태펀드	190,000	-	190,000	-
해양수산부	한국해양 진흥공사 등	1,647,197	-	1,647,197	-
환경부	한국수자원 공사본사 등	517,481	-	517,481	-
중소벤처기업부	한국 모태펀드 등	3,006,037	△4,658	3,001,378	-
합 계		126,200,994	△2,466,111	123,734,883	644,795

출처: 대한민국 정부,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2020.5를 바탕으로 재작성

[센터의견] 개선 필요

- 현재 출자금과 관련한 충분한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2020년 연차개선 과제로 '출자금 공시 개선'을 검토 중에 있음

2) 연금충당부채 거시경제 변수를 변경할 경우 그 효과를 충분히 공시

정부는 연금충당부채 산정 시 거시경제 전제를 변경할 경우에도 변경 전과 변경 후의 거시경제 변수를 적용한 수치를 병행하여 국가결산보고서에 적시함으로써 연금충당부채 증가 원인을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재정법령에 따라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장기재정전망에 적용되는 거시경제 전제를 국가결산서에도 같은 주기로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매년도 신규 거시경제 전제를 토대로 국가결산서 상의 연금충당부채를 산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 정립이 필요해 보인다.

〈예년의 재무적 가정을 적용한 경우와 정부발표의 연금충당부채 규모 비교〉

(단위: 조원, %)

구 분	2018년		2019년		
	2014년 12월 기준 (2015년 12월 기 발표된 제1차 장기재정전망 내 기본 시나리오에 적용)		2019년 12월 기준 (2020년 9월 국회제출 예정인 제2차 장기재정전망에 적용 예정)		
연금충당부채	939.9	1,040.4		944.2	
전년 대비 증가분	94.1	100.5		4.3	
전년 대비 증가율	11.1	10.7		0.5	
비 고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출처: 기획재정부, 「2020.4.7.(화) 일부 언론 매체 연금충당부채 통계 눈속임, 꼼수 보도 관련」, 보도
참고자료, 2020.4.7를 바탕으로 재구성

[센터의견] 현행유지 및 보완

- 연금충당부채 산정 시 최적의 가정을 사용해야 한다는 회계 규정에 의거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일관성 있게 거시경제 변수를 적용하고 있음. 보도자료 등을 통해 거시경제 변수 변경 시 변경 전과 변경 후의 거시경제 변수를 적용한 수치를 함께 공시하고 있음
- 다만, 연금충당부채 산정 시 적용하는 거시경제 변수 변경 시 재무제표상에 충실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음

나. 예정처: 국가회계 신뢰성 강화 요구

1) 오류수정액이 200.1조원에 이르는 국가재무제표 신뢰성 저하

2011~2019년 동안 국가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원의 수정사항과 전기오류수정손익의 합계액은 총 200.1조원이며, 총 9회의 결산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감소되지 않고 매년 평균적으로 22.2조원 발생하고 있다.

〈최초 재무제표 개시 이후 국가재무제표의 오류 현황〉

(단위: 조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감사원 수정사항	18.6	18.5	15.4	11.9	7.0	12.5	4.1	14.2	16.5	118.7
전기오류수정손익	0	12.6	4.4	13.6	11.9	7.3	15.9	8.8	6.9	81.4
합계	18.6	31.1	19.8	25.5	18.9	19.8	20.0	23.0	23.4	200.1

출처: 기획재정부

[센터의견] 개선 필요

- 국가재무제표의 활용을 위해 신뢰성 높은 재무정보의 제공은 매우 중요함.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국가재무제표의 토대가 되는 중앙관서 재무제표의 오류 감소를 위해 중간점검 및 교육을 수행해 왔으며, 추후 지속적인 관리를 강화할 예정임
- 다만, 단순히 오류수정액 규모로 국가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평가하기보다는 오류의 원인과 내용을 파악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됨. 현재 오류 규모는 평균 총자산(1,871조원)의 1% 수준으로 심각한 신뢰성 훼손으로 보기는 어려움

2)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을 중심으로 한 재무제표의 적정성 미흡

누락, 중복 등의 오류가 발생하는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국가재무제표가액을 신뢰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으므로, 재산 등재 등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국유재산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줄이기 위하여 담당자 교육을 확대하고, 주기적인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오류를 조기에 발견하고 수정할 필요가 있다.

[센터의견] 개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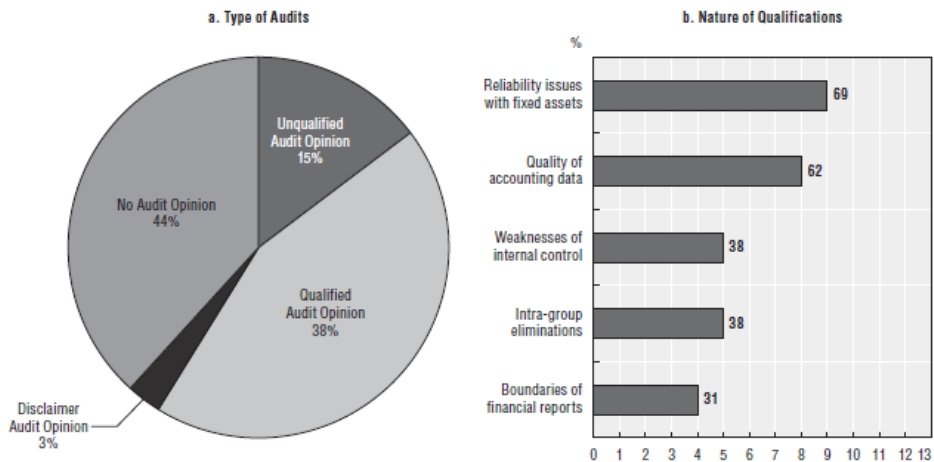
-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등에서 다수 발생하는 오류를 줄이기 위하여 매년 결산 담당자 교육 및 중간점검을 통해 오류를 조기 발견하도록 노력하고 있음
- 사후적인 점검을 통해 재무 오류를 줄이는 노력도 필요하나, 근본적으로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 강화가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3) 감사원의 국가재무제표 감사 역량 강화 방안 필요

감사원은 회계결산 검사만 수행하며, 재무제표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감사의견을 표명할 정도의 감사증거를 수집하지는 않는다. 그 결과, 감사원의 회계결산 검사를 거친 국가재무제표에서 또 다른 오류가 빈번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함으로써 국가재무제표는 안정화되지 못하고 이는 실정이다. 감사원은 국가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회계결산 검사의 정교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OECD 국가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형태〉

Figure 8. OECD Countries: Type of Audits and Issues with Year-end Financial Statements



Note: Figure 6a: where no audit opinion is provided according to international auditing standards, SAI undertake compliance audits or other types of controls; Figure 6b: Percentage of countries that received a qualified opinion on their year-end financial statements, for the 13 countries that have received a qualified opinion on their financial statements.
 Source: OECD Accruals Survey (2016).

출처: Accrual practices and reform experiences in OECD countries Results of the 2016 OECD Accruals Survey

[센터의견] 개선 필요

- 현행 국가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감사원의 결산검사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그 방안으로 감사의견 표명 등을 고려해 보는 것이 필요함

4) 전비품의 체계적인 관리 필요

국방부는 전비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자산가액을 산출하는 등 전비품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국방부는 법령 등에 따라 전비품 중 비등록장비와 비소모성 물자에 대해서는 재고법으로, 수리부품 중 요수리품과 회수품에 대해서는 표준단가 차등적용 등의 방법으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비품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어 체계적인 전비품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군수품 평가방법 및 근거〉

구분	평가방법	
장비	등록장비	취득원가 이후 감가상각(정액법) 실시
	비등록장비	표준단가 적용 및 재고법에 따른 감가상각 실시
탄약	표준단가 적용(감가상각 미실시)	
수리부속	표준단가 적용(감가상각 미실시)	
	단, 요수리품과 회수품은 표준단가 차등 적용	
물자	비소모성 물자	표준단가 적용 및 재고법에 따른 감가상각 실시
	소모성 물자	소모 시 비용 처리

주: 재고법은 재고자산의 평가를 적용받는데,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시가를 재정상태표 가액으로 하는데, 시가는 순실현가능가액을 말함

출처: 국방부

[센터의견] 개선 필요

- 전비품 관련 회계처리는 국가회계기준이 아닌 국방부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를 수 있도록 특례를 허용하고 있는 만큼, 그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체계적 관리가 필요함

5) 국민연금기금 등 4대 연금 유동자산 및 투자자산과 관련한 주식 공시 필요

국민연금기금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등 4대 연금의 유동자산 및 투자자산 등은 향후 연금지급을 위한 자산으로, 기획재정부는 이를 국가 순자산과 관련한 주식 사항 등으로 별도 표기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적정 재무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경우 향후 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될 예정인 유동자산 및 투자자산은 국가 재정상태표에 자산으로 반영된 반면, 관련 연금충당부채는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 재정상태표상의 순자산 556조원과 관련하여 향후 연금으로 지급될 예정인 연금기금의 유동자산 및 투자자산의 내용을 주식으로 공시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가 재정상태표 및 4대 연금기금의 자산, 부채, 순자산(2019)〉

(단위: 조원, %)

구분	국가 재정 상태표 (A)	4대 연금							
		국민연금 (a)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b)	소계 (c=a+b)	비중 (c/A)	공무원 연금 (d)	군인 연금 (e)	합 계 (a+b+d+e)	내부거래 제거 후 잔액
자산 (A)	2,299	737	21	758	33	19	1	778	653
유동자산	459	193	9	202	44	3	-	205	196
투자자산	914	543	12	555	61	10	1	566	450
소계	1,373	736	21	757	55	13	1	771	646
부채 (B)	1,744	-	1	1	0	809	191	1,001	1,001
유동부채	154	-	-	-	-	2	-	2	2
장기차입부채	547	-	1	1	0	4	-	5	5
연금충당부채	944	-	-	-	-	758	186	944	944
순자산 (A-B)	556	737	20	757	136	△790	△190	△223	△348

출처: 부처별 재정상태표를 바탕으로 재작성

[센터의견] 개선 필요

- (자산인식) 국민연금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유동자산 및 투자자산의 규모가 매우 중요하고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공시 개선 검토 필요
- (부채인식) 국민연금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근로에 대한 보상적 성격이 아닌 사회보장적 비교환거래 성격이기 때문에 현재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표시방법은 적정

07

센터동향

1 국가회계 자문위원 신규(재) 위촉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이하 '센터')는 9월 2일, 제3기 자문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정부, 학계, 회계사 등 각계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된 제4기 국가회계 자문위원을 신규(재) 위촉하였다. 위원장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규정에 따라 김완희 센터 소장이 맡아 회무를 관장하게 되며, 제4기 위원들의 임기는 2년(2020.9.2~2022.9.1)이다.

제4기 국가회계 자문위원 신규(재)위촉 현황(13명)

- 정부위원(1): 권기대(감사원 기획조정실)
- 민간위원(9): 김동수(삼일회계법인), 김봉환(서울대학교), 김진욱(건국대학교), 박세환(한국회계기준원), 이아영(강원대학교), 주인기(연세대학교), 지현미(계명대학교), 최연식(경희대학교), 허웅(이정회계법인)
- 해외위원(3): Andreas Bergmann(스위스 취리히 응용과학대학교), Delphine Moretti(OECD 공공예산정책국), Ian Ball(공공부문회계사협회)

국가회계 자문위원회는 국가회계 관련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센터 내 자문기구로서, 국가회계기준 제·개정, 대내외 국가회계기준 연구 등의 국가회계와 관련한 주요 사안 전반에 대해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한다. 지난 2010년부터 지금까지 총27차에 걸쳐, 71개의 안건을 상정하여 국가회계기준 개선 및 IPSASB 기준 연구에 이바지해 왔다.

센터는 제4기 자문위원들의 국가재정과 공공회계의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센터와 국가회계 발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 「효율적 정책결정을 위한 발생주의 국가회계정보 이용 활성화방안」 최종보고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이하 '센터')는 위탁과제로 「효율적 정책결정을 위한 발생주의 국가회계정보 이용 활성화방안」 연구를 우남세무회계컨설팅과 수행하였으며(2020.5.21.~8.20, 3개월), 2020년 8월 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4층 중회의실에서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다. 박성동 대표가 최종보고하였고, 외부 토론자로 계명대학교 지현미 교수, 기획재정부 장시열 사무관이 참석하였다.

이번 연구는 발생주의 국가회계정보 정책적 활용방안 모색을 위해 수행된 연구로, 발생주의 국가회계정보의 수요·공급 현황 분석, 유용한 국가회계정보 생산을 위한 인프라 강화방안, 국가회계정보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센터의 역할 강화 등에 대해 제시하였다.

가. 최종보고 발표요약

□ 발생주의 국가회계정보의 수요 및 공급 현황 분석

효율적 정책결정을 위한 발생주의 국가회계정보의 이용 활성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직공무원, 공인회계사 등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무원 등이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주의 국가회계정보를 활용하는 정도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구조적 측면에서 발생주의 국가회계정보를 바탕으로 한 재정관리 및 재정정책 수립 프로세스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회계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발생주의 국가회계정보 활용 교육이 고위 공무원 중심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유용한 국가회계정보 생산을 위한 인프라 강화방안

우리나라 재정부문에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가 성공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인적·물적 자원을 필요로 하고, 정치적 지지와 고위 공무원들의 충분한 이해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국가회계 인적역량 강화, 국가회계교육 대상 등 확대, 실효성 있는 회계책임관제도 운영이 전제되어야 하며, 특히 회계책임관제도의 경우

제도 운영에 대한 경비 지원, 기획재정부장관 주재 회의 개최 등 중앙관서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 국가회계정보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의 역할 강화

정책 담당자의 효율적 의사결정을 위해 국가회계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이용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는 공무원을 포함한 다양한 정보이용자에게 국가회계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과는 차별화된 시스템이어야 한다. 이러한 시스템 마련을 위해 정보이용자의 의견수렴이 전제되어야 하고, 정책과 국가회계정보가 연계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국가회계정보 산출자와 정책담당자 사이의 중간자 역할을 담당하여야 하며, 재정부문의 변화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발생주의 재무정보를 기반으로 한 성과를 체계적으로 측정·평가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나. 토론내용 요약

(지현미) 국가회계정보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기획재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가 사전적으로 국가회계정보의 정책적 활용 가능성에 대해 입증할 필요가 있다.

(장시열) 방대한 국가회계정보가 있음에도 활용이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 정책결정자에게 어떠한 자료가 필요한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필요한 정보와 공급되는 정보 간의 간극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김완희) 발생주의제도 도입이 10년이 지나 국가회계정보의 활용사례를 가시적으로 보여줄 때가 온 것 같다. 정책결정자들이 실제 업무에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인터뷰 등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3 제1차 및 제2차 「발생주의 재무정보 연구회」 개최

국회회계재정통계센터(이하 '센터')는 발생주의 재무정보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연구결과 및 연구방향을 공유하기 위한 발생주의 재무정보 연구회(이하 '연구회')를 운영하고 있다. 연구회는 센터의 주관으로 운영되며, 외부 전문가로 서울대학교 김봉환 교수, 단국대학교 성시경 교수, 경찰대학교 유승원 교수와 한국재정정보원의 정성호 연구위원, 박정수 부연구위원, 심혜인 부연구위원이 참여한다.

센터는 총 4차의 연구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두 차례의 연구회를 개최하였다. 제1차 연구회는 2020년 7월 30일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4층 중회의실에서 개최되었고, 한국재정정보원의 박정수 박사, 심혜인 박사가 「dBrain 재정사업정보 관리방안」, 「주요 재정사업의 집행 특성과 재정관리의 시사점」에 대해 각각 발표하였다. 이어서 기획재정부의 이남희 사무관, 센터의 김완희 소장, 문창오 부소장, 한소영 팀장 등이 참석하여 연구주제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2차 연구회는 2020년 9월 15일에 영상회의로 개최되었고, 센터 이소정 회계사가 「dBrain에서 산출된 발생주의 재무정보를 근거로 프로그램 총원가 분석」에 대해 발표하였다. 외부토론자로 서울대학교 김봉환 교수, 단국대학교 성시경 교수, 경찰대학교 유승원 교수와 한국재정정보원 정성호 연구위원, 박정수 부연구위원, 심혜인 부연구위원이 참여하였으며, 센터에서는 김완희 소장, 문창오 부소장, 한소영 팀장 등이 참석하였다.

가. 제1차 연구회 발표

□ (발표 1) 발생주의 국회회계정보의 수요 및 공급 현황 분석(박정수, 한국재정정보원)

현행 프로그램 예산체계는 사업단위 편성에 대한 세부지침이 없고, 프로그램, 단위사업 수 통제로 신규 프로그램이 세부사업이나 내역사업으로 편성되는 경우가 빈번해 상위레벨의 대표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이러한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매년

과목구조개편을 수행하나, dBrain 시스템상 사업이력관리가 되어 있지 않아 재정 정보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정책목적, 사업 및 수혜자의 속성에 따라 사업 분류의 구조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사업분류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정보 이력 관리가 시행되어야 한다. 세부사업별 속성정보 관리 및 분류는 재정사업정보 전산화 관리의 시작이며, 관리범위를 점진적으로 높이고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

〈목차〉

I. 서론

II. dBrain 재정사업정보 관리체계

1. 재정사업정보 관리 개요
2. 프로그램 예산체계 현황
3. dBrain 재정사업정보 관리 현황
4. 문제점
5. 개선방향

III. 해외사례

1. 미국
2. 캐나다
3. 영국
4. 해외 사례 시사점

IV. 속성분류 기반 재정사업정보 관리 방안

1. 속성 분류체계 재구조화
2. 사업정보관리제도 운영방향

V. 결론

본 뉴스레터에 수록된 내용의 원문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kpfis.or.kr/lay1/bbs/S1T300C301/B/79/view.do?article_seq=807&condition=&rows=&keyword=

□ (발표 2) 주요 재정사업의 집행 특성과 재정관리의 시사점(심혜인, 한국재정정보원)

dBrain 시스템의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 관리대상사업(2019년 총예산 기준 53.3%임)의 연도별 추이와 유형별 집행 특성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관리대상사업의 경우 적극적인 제도개선 노력으로 2016년 이후부터 계획과 실적이 거의 같은 규모로 진행되었고, 유형별 집행 특성을 분석한 결과 상반기 집중집행형 사업이 총세부사업 수의 65.9%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집행점검 결과에 비추어 집행과 예산편성과의 연계 강화 및 dBrain 시스템을 통한 체계적인 집행점검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목차>

I. 서론

1. 분석의 목적 및 필요성
2. 분석의 범위 및 방법

II. 재정집행 관리 및 현황

1. 재정집행 관리제도
2. 주요 관리대상사업

III. 집행률 추이 분석

1. 연도별 추이
2. 분야별 추이
3. 비목별 추이

IV. 유형별 집행 특성 분석

1. 집행형태에 따른 구분
2. 관리목표에 따른 구분

V. 요약 및 시사점

본 뉴스레터에 수록된 내용의 원문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kpfis.or.kr/lay1/bbs/S1T300C301/B/79/view.do?article_seq=1119&cpage=&rows=&condition=&keyword=

나. 제1차 토론내용 요약

(김완희) 프로그램, 단위, 세부사업 간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 정립 및 사업단위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dBrain의 자료를 재구성하여 주요 재정사업의 집행 특성을 보여줌으로써 재무정보의 활용 가능성을 보여준 연구였다.

(이남희) 조직개편, 사업명칭 변경 등 발생 시 사업이력관리가 가능하도록 차세대 dBrain 개선이 필요하며, 재정사업의 집행 특성 분석이 향후 재정 효율성 판단에 중요한 지표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 제2차 연구회 발표

- dBrain상 발생주의 재무정보를 활용한 프로그램 총원가 총괄분석(2010~2019)
(이소정,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dBrain에서 산출된 프로그램 총원가를 기준으로 2010년 발생주의 도입 이후 사업 수 및 프로그램 총원가의 변동을 파악하였으며, 16대 분야별 시계열 분석 수행을 시도하였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의 일부부문을 중심으로 시계열 분석이 가능하도록 세부사업까지 변동내역을 파악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노인, 아동 등 수혜자 중심의 재무분석을 수행하였다.

하지만 재무분석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dBrain 시스템상 사업이력관리가 되어 있지 않고, 부문개편 및 과목구조개편 등으로 매년 프로그램이 변동되는 한계점이 존재했다. 시스템상 사업이력관리가 이뤄질 경우 프로그램 총원가의 변화 이력을 보다 쉽게 추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신뢰성 및 활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원가정보는 프로그램 수준에서 관리되기보다는 사업 속성 중심으로 산출될 경우 활용성이 더 커질 것이라는 시사점이 제시되었다.

<목차>**I. 연구배경****II. 사업총괄표 및 원가분석 방법**

1. 연도별 사업총괄표
2. 원가분석 방법

III. 분야별 프로그램 현황

1. 분야별 프로그램 총원가 및 개수
2. 분야별 관련 부처 수 및 부처별 총원가

IV. 환경 분야 사업변동사유 및 영향

1. 사업변동사유 파악
2. 사업변동사유가 미치는 영향 파악

V. 사회복지 분야 사업변동내역

1. 사업이력관리를 통한 변동내역 파악
2. 사업이력관리의 한계점

VI. 사업이력관리의 장점 및 활용방안

1. 공시목적 장점
2. 관리목적 장점 및 활용방안

VII. 결론

라. 제2차 토론내용 요약

(김봉환) 사업이력관리를 위해 자체적인 분류체계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며, 프로그램 총원가가 의미 있는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성과와의 연계가 있어야 한다.

(성시경) 프로그램 등 전반적인 개편이 매년 일어나고 있어 사업이력 추적이 과연 의미 있는 일인지 고민해야 하고, 특히 이렇게 전반적 개편이 발생하는 사유에 대해 우선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유승원) 예산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개수의 변동이 없어 프로그램, 단위사업이 비대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시계열 분석 등 재무분석 수행을 위해서는 예산체계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

(정성호) 주기적 사업변동을 dBrain 시스템에 반영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사업이력관리를 할 경우 사전에 이력관리의 주체 등을 고민하여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박정수) 현행 dBrain 시스템은 당해 연도 예산만을 반영하고 있어 연도별 연결은 어렵다. 비용 대비 효익 관점에서 사업이력관리를 논의해야 하고, 단순 이력관리가 아닌 연구기관 간 교류를 통한 체계적인 이력관리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심혜인) 동일 사업인지 여부에 대해 정의를 내려 사업이력관리를 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사업이력관리를 통해 산출된 정보의 이용자에 대한 대상 선정을 명확히 할 필요 있다.

(김완희) 이번 연구는 현행 프로그램 총원가 분석의 한계점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한 것이다. 향후 부처별 원가분석, 성과지표와 연계하는 방안 등의 연구를 추가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4 「공기업·준정부기관 재무결산서 개선방안」 최종보고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가 한국정부회계학회에 위탁하여 진행하고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재무결산서 개선방안」 최종보고회가 2020년 6월 24일(수) 센터 중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최연식 교수(경희대학교)와 조형태 교수(홍익대학교)는 중간보고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고, 이어 외부 교수인 김문현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와 박종일 교수(충북대학교) 및 센터 실무진의 토론이 이어졌다. 센터에서는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2019회계연도 공기업 결산서(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위탁과제 최종보고(6.24), 센터 중회의실〉

5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신뢰성 제고방안」 최종보고서 제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기획재정부 수탁과제인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신뢰성 제고방안 연구」를 완료하여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동 과제는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에 대한 문제점을 FGI를 통해 검토하였으며,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도를 설문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신뢰성 개선을 위해 회계역량 측면에서 회계교육 방안과 회계직렬 신설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회계책임 측면에서 재무제표 작성 책임 명시, 사전공시 실시, 경영진과 감사의 책임강화 방안 및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또한 회계감독 측면에서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규정 마련 및 외부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감사인 등록제, 감사시간, 감사보수 등을 검토하며, 회계감사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회계감리제도 도입방안을 제안하고, 연구결과에 대한 실무적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08 세미나

1 2020년 한국정부회계학회 하계학술대회 결과보고

가. 개요

- 대주제: 비영리 공공분야에서 감사공영제 도입 현황 및 과제
- 일 시: 2020.8.20.(목) 13:30~20:00
- 장 소: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B, 소회의실2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일반 참가자는 현장 입장을 제한하고 온라인으로 진행)
- 주 최: 한국정부회계학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후 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삼일회계법인

<주제발표 및 토론>

[Plenary session]

- [좌 장] 김경호(홍익대학교)
- [발표1] 비영리·공공부문 감사공영제 도입의 필요성과 과제(정도진, 중앙대학교)
- [발표2] 비영리 공공분야에서 감사공영제 도입 현황 및 과제(윤정원, 한국공인회계사회)
- [토 론] 김동수(삼일회계법인)
- 김봉환(서울대학교)
- 남혜정(동국대학교)
- 백광엽(한국경제신문)
- 양영철(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이영석(중소회계법인협의회)

[세션 1부]

[좌 장] 강인재(재정성과연구원)

[발표1] 지방자치단체의 기능별 부문별 불용액 발생액 및 추이와 정책적 대안
(주윤창, 임충혁, 인하대학교)

[토 론] 성시경(단국대학교)
이희재(창원대학교)

[발표2] 불용액이 차기 예산편성에 미치는 영향: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김용수, 숭실대학교)

[토 론] 박미희(용인송담대학교)
조형태(홍익대학교)

[세션 2부]

[좌 장] 엄태호(연세대학교)

[발표3]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 부진원인 분석(최정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토 론] 유승원(경찰대학교)
임동완(단국대학교)

[발표4]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품질 실태와 제고방안(김봉환, 서울대학교)

[토 론] 강성조(한국지방재정공제회)
최연식(경희대학교)

나. 발표 및 토론 결과 요약**[Plenary session]****□ 주요 발표내용**

- (발표1) 비영리·공공부문 감사공영제 도입의 필요성과 과제
(정도진 교수, 중앙대학교)

「비영리·공공부문 감사공영제 도입의 필요성과 과제」는 정도진 중앙대학교 교수가 발표하였다. 본 연구는 비영리·공공부문 회계의 투명성 수준을 파악하고 더불어 비영리·공공부문 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모색하였다. 현재 비영리·공공부문은 민간부문과 달리 회계 투명성 순위를 발표하는 공식자료가 없으며,

국세청 홈텍스에 제공하는 결산서류에도 오류가 발견되고 있다. 오류 사례로 ○○ 공익단체가 2018~2019년에 공시한 기부금모집지출명세서에 인건비로 2천명에 11억원을 신고하였으나, 2017~2018년에는 인건비로 0명에 11억원을 신고한 사실이 있다. 감사공영제 도입을 위한 인식 설문조사에도 평균 2.81로 공익법인에 대한 회계 투명성이 낮다고 한 반면, 평균 4.07은 회계 감사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미국, 영국 등 해외 국가에서도 2013년부터 공공부문의 사회서비스 전달 역할(social service delivery)과 공공부문 개혁(public sector reform) 측면에 있어 회계 투명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비영리·공공부문의 투명 회계 달성을 위해 공공재로서 감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광의의 감사공영제의 도입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시행원칙을 마련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 (발표2) 비영리 공공분야에서 감사공영제 도입 현황 및 과제
(윤정원 회계사, 한국공인회계사회)

「비영리 공공분야에서 감사공영제 도입 현황 및 과제」는 윤정원 회계사가 발표하였다. 본 연구는 감사공영제를 도입한 해외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감사공영제 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먼저, 감사원 국제기준(ISSAI)에서는 공공재원이 투입되는 조직의 경우 감사원의 책임하에 외부 감사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 부처의 재무제표 감사와 관련하여 영국은 PSAA(지방자치단체 연합 산하 비영리기구)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통해 지방 정부의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공공감사법에 따라 감사원장이 감사인 지정 및 감사 보수를 결정하고 있으며, 미국도 연 750달러 이상인 비영리 조직은 외부 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지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익법인 등의 자산규모를 고려하여 2022년부터 외부 감사인을 지정하는 주기적 지정제를 도입하기로 예정되어 있으며, 그 외 대규모 점포와 사립학교·지방공기업 등에 주기적 지정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다. 본 연구는 향후 과제로 비영리·공공부문의 상이한 회계기준을 통일하고, 공시 대상의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더 나아가 감사공영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단계적 인증제도의 도입과 제3섹터 관리 및 지원을 위한 기초법의 신설을 제안한다.

□ 주요 토론내용

주제 발표에 이어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토론자의 주요 발언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동수) 감사공영제의 제도화는 필요하나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회계적 인프라가 부족한 공익법인의 현황 파악과 감사비용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둘째, 각각의 회계기준이 제정되어 있는 비영리·공공부문만의 개념체계가 필요하다. 셋째, 기존 감사 기준에서 제외된 기부자 및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새로운 감사 기준이 논의되어야 한다.

(김봉환) 감사공영제 도입을 위한 선결과제로는 첫째, 증가되는 감사비용에 대해 보조금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감사인 지정을 담당하는 공익법인 등의 신설을 제안한다. 셋째, 비영리 분야를 적극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감독부처별로 상이한 회계기준을 통일해야 한다.

(남해정) 효율적인 감사공영제 도입을 위해 재무제표 작성자인 비영리법인을 위한 인센티브(보조금, 세제혜택)가 필요하다. 이용자 측면에서 재무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기능적 역할 측면에서 여러 비영리 회계기준 간의 상충문제 해소 등 회계제도를 관할하는 컨트롤 타워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백광엽) 감사공영제를 실시하는 해외 국가들의 경우 감사비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감사공영제를 운용할 기구 신설을 통해 효율적이고 신속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양영철) 영국이 감사인 지정의 공공성 유지를 위해 PSAA라는 기관을 설립한 것과 같이 한국에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그 역할을 수행해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이영석) 비영리·공공부문을 위한 별도의 공익법인 감독권과 감독기구 설립이 필요하다. 또한, 비영리 분야 회계감사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이 필요하다. 특

히 비영리 분야를 회계사 시험 과목에 중요한 비중으로 추가하여 비영리 분야에 대한 회계교육을 국가적인 과제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세션 1부]

□ 주요 발표내용

- (발표1) 지방자치단체의 기능별·부문별 불용액 발생액 및 추이와 정책적 대안
(주윤창 박사, 임충혁 박사, 인하대학교)

「지방자치단체의 기능별·부문별 불용액 발생액 및 추이와 정책적 대안」은 주윤창, 임충혁 인하대학교 박사가 공동 발표하였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불용액 발생 비율을 자치단체 유형별, 기능별 세출 분야로 나누어 세부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자치단체의 유형별로 불용액 발생 비율을 살펴보면, '시'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광역시·도'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세출 분야별로 불용액 발생 비율을 살펴본 결과, 환경보호·국토 및 지역개발·과학기술 분야에서 불용액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세출 분야별 불용액 발생 비율은 자치단체 유형별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 (발표2) 불용액이 차기 예산편성에 미치는 영향
(김용수 박사, 숭실대학교)

「불용액이 차기 예산편성에 미치는 영향」은 김용수 숭실대학교 박사가 발표하였다. 2020년 지방재정분석제도에서 재정계획성 분야 지표를 신설하여 불용액 비율을 평가지표로 추가하면서 불용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본 연구는 당기의 불용액이 차기 예산편성금액에 미치는 영향과 지방자치단체장의 특성이 불용액의 자기상관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차기 예산편성금액은 당기 예산 대비 차기 예산의 증가율로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당기 불용액이 클수록 차기 예산편성금액이 증가하였다. 둘째, 당기 조기집행률이 높은 경우, 당기 불용액과 차기 예산편성금액과의 상관관계가 약화되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장이 여당 소속인 경우 당기 불용액과 차기 불용액의 자기상관관계가 증가하

였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장이 연임한 경우 당기 불용액과 차기 불용액의 자기상관 관계가 감소하였다.

□ 주요 토론내용

주제 발표에 이어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토론자의 주요 발언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시경) 지방자치단체 유형별로 예산편성 비중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불용액 발생 비율뿐만 아니라 불용액 발생규모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향후 불용액 감소를 위한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현재의 분석결과는 전반적인 현황은 보여줄 수 있지만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재정사업별로도 구분하여 불용액 추이를 좀 더 세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의 실제 사례를 분석하여 예산편성의 비효율과 예산집행의 비효율을 구분해야 한다.

(이희재) 불용액의 발생원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불용액 처리방법 등 질적 사례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앙정부의 보조금 지급 지연과 같은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례나 지방자치단체별 예산집행 특성 등을 분석한다면 실증결과 해석에 도움이 될 것이다.

(박미희) 불용액의 발생원인 중 효율적인 원가절감(긍정적 측면)과 비효율적인 예산집행(부정적 측면)을 구분하여 각각의 결과를 다르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만약 효율적인 원가절감에 의해 불용액이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조형태) 보조금이 교부세보다 정치적 요인이 작용할 확률이 크기 때문에, 교부세와 보조금을 구분하여 정치적 요인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또한 시계열 상관성을 통제하기 위해 고정효과 분석을 추가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세션 2부]

□ 주요 발표내용

- (발표1)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 부진원인 분석
(최정우 주임연구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 부진원인 분석」은 최정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주임연구원이 발표하였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제도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주로 경제적 효과를 다루고 있으며, 실적이 부진한 지자체의 특성에 대한 연구 관심도는 낮은 상황이다. 지자체의 신속집행제도 실적 부진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중앙정부(행정안전부) 차원의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지자체의 집행 현황 점검 등이 시행되고 있지만, 동일한 제도와 개선방안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지역별로 상이한 집행률을 띄고 있어 본 연구는 이러한 지역별 차이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당 연구는 지자체를 신속집행 실적에 따라 상위 25%, 하위 25% 집단으로 구분하고, 평균비교검정(t-test)을 통해 재정 특성 차이와 지출 특성 차이의 변수를 대입하여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재정 특성의 경우 실적이 부진한 지자체는 재정규모가 작고, 국고보조금 비율이 낮으며, 재정 자주도와 전년도 이월률 및 불용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지출 특성의 경우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는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는 집행률이 낮고, 사회복지 분야는 집행률이 높은 반면, 집행률이 부진한 지자체는 상대적으로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분야의 집행률이 높고, 사회복지 분야의 집행률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발표2)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품질 실태와 제고방안
(김봉환 교수, 서울대학교)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품질 실태와 제고방안」은 김봉환 서울대학교 교수가 발표하였다. 2007년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지방자치단체에 도입된 이후 매년 보고되는 재무제표의 품질의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회계품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회계검토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다. 회계품질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미수세금충당금 비율, 중대한 오류의 총액, 중대하지

않은 오류의 총액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회계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회계검토의 특성으로는 ‘검토인의 계속계약 기간’, ‘검토인의 전문성’, ‘검토수수료’를 설정하여 이 특성들이 회계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검토인의 계속 계약 기간이 증가할수록 회계품질이 하락하였다. 둘째, 검토인의 전문성이 증가할수록 회계품질이 증가하였다. 셋째, 검토수수료가 증가할수록 회계품질이 증가하였다. 넷째, 전문성이 높은 검토인의 계약기간이 증가할 경우 회계품질 개선효과가 약화되었다.

□ 주요 토론내용

주제 발표에 이어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토론자의 주요 발언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승원) 신속·조기집행의 장점을 전제로 하는 경우, 관련 제도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다수의 논문이 존재하지만 유의한 경제적 효과를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보충 의견이 요청되었으며, 예산이 현장에서 소화 가능한 수준 이상으로 편성된 것이 집행 부진의 원인일 수 있으며, 조기·신속 집행은 일시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비효율적일 수 있다.

(임동원) 상위 25%와 하위 25%를 나눈 기준과 해당 논문에서 적용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이론적인 근거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며, 신속집행 관련 정책수단이 활용되지 못한 이유를 추후에 이루어질 심층분석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강성조) 데이터를 통해 제도의 보완을 위한 실증적인 분석이 이루어져, 향후 정책 제안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2년도부터 미수세금충당금 비율이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보아 보수적인 회계처리가 감소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중대한 오류와 중대하지 않은 오류는 민간에서 감사품질 연구에 자주 사용되는 지표이긴 하지만,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해서 기타순자산증감을 활용하는 것도 또 다른 방법일 수 있다. 또한 결산조정분개 총액 또는 횡수를 통해 회계품질을 연구해 볼 수 있다.

(최연식)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검토 수수료가 낮은 것으로 보이는바, 민간의 회계감사 혹은 검토와의 투입시간, 수수료 비교를 통한 현황 파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추가 정책 제언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보수적인 회계처리를 측정하기 위해 미수세금충당금의 재량적 요인을 활용한다면 보다 정교한 측정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미수세금충당금 비율로 대변되는 보수적인 회계처리가 회계품질에 대응된다는 논리의 검토가 필요하다.

2 「2020년 한국회계기준원 개원 21주년 기념 웹세미나」 결과보고

가. 개요

- 대주제: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일 시: 2020.8.26.(수) 15:00~17:30
- 참여방법: 한국회계기준원 홈페이지에 온라인 등록 후 웹세미나 참여
- 주 최: 한국회계기준원

<주제 발표 및 토론>

[좌 장] 정석우(고려대학교)

[발표1] 별도재무제표 유용성검토 및 개선방안[류충렬(KAIST), 심준용(명지대학교)]

[토 론] 이형관(나이스평가정보)

송민섭(서강대학교)

김동길(한영회계법인)

[발표2] 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의 적용실태와 재무정보 유용성 제고

[윤성수(고려대학교), 두서영(강남대학교)]

[토 론] 황문호(경희대학교)

현승임(삼정회계법인)

나. 발표 및 토론 결과 요약

□ (발표1) 별도재무제표 유용성검토 및 개선방안

[류충렬 교수(KAIST), 심준용 교수(명지대학교)]

「별도재무제표 유용성검토 및 개선방안」은 류충렬 KAIST 교수와 심준용 명지대학교 교수가 공동 발표하였다. IFRS(국제회계기준)상 주재무제표는 연결재무제표이며, 한국은 2011년 K-IFRS 도입 이후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의 용도와 역할에 대한 논의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는 한국의 법·경제 환경에서는 별도재무제표의 역할이 여전히 중대하지만, 관련 기준은 부족하기 때문이다. 본 보고서는 법령검토 및 이해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별도재무제표의 용도를 파악했다. 현행 법령에서 별도재무제표의 작성법과 활용을 명시하고 있었으며, 이해관계자의 특성에 따라 별도재무제표를 주요 정보로 활용하거나 그 유용성을 인정하여 보조 정보로 활용하고 있었다. 또한, 한국회계기준원 질의회신 및 감사인 사례를 토대로 별도재무제표 작성 시 발생하는 이슈를 검토한 결과 K-IFRS 제1027호(별도재무제표)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발생하는 이슈가 대부분인 것을 확인했다. 특히 별도재무제표에 적용되는 원가법, 지분법, 공정가치법의 선택을 작성자의 권한으로 두고 있어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의 측정방법을 각각 상이하게 적용할 경우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이 저해되고 목적적합성이 훼손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에, 연구진은 현행 K-IFRS 제1027호의 개선을 별도재무제표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제안했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첫째, 원가의 개념 명시, 둘째, 투자자산의 평가방법의 일원화(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 셋째, 주식공시사항의 범위 보완이 있다.

□ (발표2) 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의 적용실태와 재무정보 유용성 제고

[윤성수 교수(고려대학교), 두서영 교수(강남대학교)]

「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의 적용실태와 재무정보 유용성 제고」는 윤성수 고려대학교 교수와 두서영 강남대학교 교수가 공동 발표하였다. 본 연구는 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재무제표 작성자, 감사인 및 감독당

국 등 이해관계자가 직면한 어려움을 식별하고 그 원인을 분석한 뒤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K-IFRS 도입 이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의 수와 연결 대상이 되는 종속기업의 수가 증가하였다. 또한 지분율 기준이 아닌 실질지배력 판단기준에 따른 연결 대상 종속기업의 수가 증가하였다. 실질지배력 판단에는 모든 사실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연결범위 판단에 재무제표 작성자, 감사인 및 감독당국 간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이에 연구팀은 아래와 같이 연결범위 판단과 회계처리에 관한 이슈를 식별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	이슈 및 제안
관련 활동의 식별과 구조화기업의 연결 판단	[이슈] 구조화기업의 관련 활동범위 판단, 투자자에게 힘을 부여하는 권리 판단에 대해 제한적인 사례만 포함하고 있음 [제안] 구조화기업의 연결에 관한 적용사례를 기준서에 추가 포함하거나 교육자료에 포함
실질지배력 판단	[이슈] 투자자의 의결권이 자신에게 힘을 부여하기에 충분한지 평가할 때의 판단요소에 대한 사례가 원론적이고 원칙적임 [제안] 회계당국의 연결사례 및 감리지적 사례 공유 및 주식공시 모범 사례 보강
본인·대리인 판단	[이슈] 의사결정자의 대리인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 중, '보상약정에 따른 보상'과 '다른 지분의 이익변동'을 고려하는 방식이 불명확함 [제안] 기준서 관련 문단에 대한 사례 또는 적용지침 제시
의사결정자가 대리인인 경우 본인의 식별	[이슈] 의사결정자가 대리인이고 권한을 위임한 본인이 둘 이상인 경우 권한을 갖는 당사자를 판단하는 데 별도의 지침이 없음 [제안] 권한을 갖는 당사자를 판단하기 위한 지침 제시
사실상 대리인 여부 판단	[이슈] 특수관계자의 사실상 대리인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이 없음 [제안] 기준서의 명료화 및 관련 사례 제시
비지배지분 후속측정	[이슈] 우선주 등의 비지배지분에 후속적으로 종속기업의 손익을 배분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이 없음 [제안] 관련 사례 제시 및 해석 요청
뜻가능자본에 대한 회계처리	[이슈] 비지배주주가 지배기업에 비지배지분을 매각할 권리를 보유한 경우 관련 부채의 최초인식, 후속변동에 관한 명확한 지침이 없음 [제안] 기준서 또는 지침 제정

□ 주요 토론내용

주제 발표에 이어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토론자의 주요 발언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형관) 정보 이용자 집단의 특성 및 국내 금융시스템, 각종 법률과 제도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 모두 주재무제표로 인정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별도재무제표가 연결재무제표와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동일한 수준의 정보이며, 정보의 다양성과 목적적합성 측면에서 공시정보 확대는 정보이용자 집단에 도움이 되지만 정보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시 기업에 무리한 부담을 주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송민섭) 해외에 비해 국내에서는 실무에서 별도재무제표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차이점은 사업부문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는 해외와 기업부문으로 연결되어 있는 국내의 상황에 기인한다. 별도재무제표와 관련하여 연결재무제표 상에서 제거되는 내부거래의 회계처리에 대한 지침의 부재가 가장 주요한 이슈일 수 있으며,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를 동시에 이용해야 하는 경우 각 재무제표의 정보효과를 구분하여 목적적합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동길) 별도재무제표 작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기준서 제1027호의 한계와 재무제표 작성비용과 감사인의 감사비용을 고려했을 때 별도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로 고려하는 것보다 연결재무제표의 보완적인 수단으로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으며, 별도재무제표의 법·제도적인 기반은 관련 법·제도가 K-IFRS 도입 이전에 수립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별도재무제표 작성 이외에 별도재무성과를 연결재무제표의 주석 또는 부록으로 공시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황문호) 연결대상이 되는 종속기업 수뿐만 아니라 종속기업이 연결실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자산 혹은 매출액 기준)도 증가하였는지 확인한다면 연결재무제표 재무정보의 중요성이 더 커질 수 있다. 연구에 제시된 7가지 구체적인 연결회계처리 이슈 외에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관련된 어려움이 무엇인지 추가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기준서 보완에 앞서 연결범위 판단 등의 회계판단에 경영진의 고

의·중과실로 인한 왜곡과 공시의 누락이 없다면 그러한 판단을 존중하는 원칙 중심 회계 관행이 자리 잡아야 한다.

(현승임) 여전히 SPC에 대한 지배력 판단에 위험과 보상에 대한 노출 정도를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SPC의 보유자산을 매입할 권리가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권리라는 해석의 근거가 불확실하고, 금융상품 기준서에서 부채로 분류되지 않는 상품을 통해 지배기업이 실질적으로 비지배지분을 지배하는 경우 해당 비지배지분을 자본으로 분류 가능한지 이견이 존재한다.

09

공지사항

1 뉴스레터 구독 안내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홈페이지(<http://gafsc.kipf.re.kr>)에서는 뉴스레터를 회원 가입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우편을 통해 정기적으로 뉴스레터 구독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① 홈페이지(<http://gafsc.kipf.re.kr>)에서 가입신청 또는 ② Tel. 044-414-2265(연구행정총괄)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 홈페이지 이용 안내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홈페이지(<http://gafsc.kipf.re.kr>)는 국가회계의 기준과 관련 법령 및 센터에서 진행하는 정책연구 관련 정보를 제시하며, 국가회계 기준에 대한 단순질의에서 문서질의까지 질의회신을 통해 신속하게 답변하고 있으니 평소 궁금했던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뉴스레터를 비롯하여 각종 발행물과 세미나자료, 연구보고자료 등 국가회계와 관련한 다양한 자료를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중이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편 집**

김완희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

한소영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국가회계팀장(국가회계 총괄)

문창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결산교육팀장(결산교육 총괄)

박윤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재정통계팀장(재정통계 총괄)

■ **발행인** :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 **발행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 044-414-2265(센터), <http://gafsc.kipf.re.kr>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발생주의의 도입과 국가회계제도의 선진화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가 선도합니다.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별관 4층
Tel 044.414.2265 Fax 044.414.2570 Homepage <http://gafsc.kipf.re.kr>

2020년 10월 30일 발행

